

정책연구

2008-16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방안 연구

이남철 정지선



## 머 리 말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학습비 지원과 학습이력을 통합·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의 도입은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학습 선택권 및 학습투자 확대를 “2080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정과제의 제안 배경에는 성인들의 평생학습 및 직무관련 학습 참여율의 저조, 평생학습 참여의 노동시장 이행성과 미흡, 학습 선택권 미흡 및 학습비 지원과 학습 이력관리의 분산 운영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

평생학습계좌제 사업은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양 부처에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양 부처 간 업무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체계적·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영역 설정과 소관부처 간의 연계 및 협력이 필수적이다. 즉,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간 중복을 방지하고 양 제도 간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부처의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은 어려운 문제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단계별 평생학습계좌제 지원 대상 및 영역 확대에 따른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위한 실천과제와 전략을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는 평생학습 내용, 지원 대상자, 지원 방식, 중장기 소요예산 추정, 관리체제 및 양 부처의 시범사업 운영의 기초를 분석하고,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의 단계별 실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정부의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년 기본연구로 2008-17번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남철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고, 정지선 박사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수고한 연구진과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은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정리, 보고서 편집 등을 헌신적으로 도와 준 박선영 위촉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권 대 봉

# 목 차

## 요 약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8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 11

### 제2장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이론적 분석 · 13

제1절 평생학습계좌제 개념 및 관련 선행 연구 · 13

제2절 평생학습 정책의 환경변화 · 19

제3절 평생학습의 현황과 문제점 · 23

제4절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 32

### 제3장 현행 평생학습계좌제와 관련 제도 분석 및 추진실태 분석 · 41

제1절 평생학습 계좌제 추진 경과 및 사업 현황 · 41

제2절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 분석 · 45

제3절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시범 사업 분석 · 54

ii 목차

제4절 학습계좌제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비교 분석 · 74

제4장 외국의 사례분석 · 85

제1절 유럽의 계좌제 관련 제도 분석 · 85

제2절 미국의 평생학습계좌제 분석 · 91

제3절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102

제5장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따른 관련 재정 분석 · 105

제1절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예산 현황 분석 · 105

제2절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따른 소요재정 추정 · 111

제6장 결론 · 123

제1절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의 의의 및 추진 전략 · 123

제2절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위한 실천과제 · 125

SUMMARY · 141

<부록 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145

참고문헌 · 151

## <표목차>

- <표 I-1> 새정부 국정지표 ‘인재대국’의 추진 방향 · 5
- <표 I-2> 새정부 국정지표 ‘인재대국’의 전략목표 및 국정과제 · 6
  
- <표 II-1>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습계좌제의 법적 근거 · 15
- <표 II-2> 평생교육법 신규비교 : 학습계좌제 관련 · 16
- <표 II-3> 고령화 속도 국제비교 · 22
- <표 II-4>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 방법 · 27
- <표 II-5>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연 교육훈련비 · 29
- <표 II-6> 노동부 개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 30
- <표 II-7> 기업규모별 지원금 비중 · 32
  
- <표 III-1> 평생학습계좌제의 내용 및 목적 현황 · 43
- <표 III-2>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운영 사업 · 45
- <표 III-3> 학습계좌제 실행기구의 역할 및 기능 · 48
- <표 III-4> 학습비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 대상 · 52
- <표 III-5>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 지출 현황('08) · 55
- <표 III-6> 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학습비 지원 학습계좌제 유관사업 · 56
- <표 III-7> 노동부 국고에 의한 훈련비 지원사업 · 57
- <표 III-8> 현행 실업자직업훈련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비교 · 63
- <표 III-9> 단계적 적용범위 확대(안) · 64
- <표 III-10>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전·후 비교 · 69
- <표 III-11> 단계별 시범사업계획(안) · 70
- <표 III-12> 추진체계 · 72
- <표 III-13> 시범사업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 73
- <표 III-14> 학습계좌제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비교 · 76
- <표 III-15> 평생학습계좌제 단계별 도입방안 · 78
- <표 III-16> 교육과학기술부 · 노동부 학습이력관리 시스템 요약 · 80

- <표 IV-1> 개인학습계좌의 보유자 현황 · 87
- <표 IV-2> 스코틀랜드의 2단계 개인학습계좌 신청자격 및 조건 · 90
- <표 IV-3> 근로자의 평생학습계좌제 3년간 증가 추이 · 97
  
- <표 V-1> 2009년도 총지출 대비 각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 현황 · 106
- <표 V-2> '09년 분야별 요구 현황(총지출 기준, 예산+기금) · 107
- <표 V-3> '09년 교육부문 예산 · 109
- <표 V-4>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2009년) · 110
- <표 V-5> 교육분야 재정운용 추이, 2002-2006 · 111
- <표 V-6> 교육 분야 재정 투자 계획, 2007-2011 · 115
- <표 V-7> 연차별 평생학습계좌제 확대도입과 재정요소 · 116
- <표 V-8> 부처별 및 연구자 소요 추정 인원 및 소요예산 · 118
- <표 V-9>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학습비 지원 대상 산정 · 119
- <표 V-10>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안): 해당자를 20%로 산정 · 120
- <표 V-11>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안): 해당자를 10%로 산정 · 121
- <표 V-12>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안): 해당자를 5%로 산정 · 121
  
- <표 VI-1> 학습경험의 인정기준과 범위 · 131
- <표 VI-2> 학습계좌 개설인원 및 소요예산(안) · 137



## [그림목차]

- [그림 I-1] 새 정부의 국가발전전략 체계 · 3
- [그림 I-2] 새정부의 국정지표 및 국정과제 구성체계 · 4
  
- [그림 II-1] 평생학습 시대로의 이행 · 20
- [그림 II-2] 주요 OECD 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 · 24
- [그림 II-3] 평생학습 참여 의향 · 26
- [그림 II-4] 학령기 교육기관에 대한 GDP 대비 교육비 투자 · 28
- [그림 II-5] 근로자 직무관련 훈련 참여율 비교 · 28
- [그림 II-6] 직업, 학력 및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 · 30
- [그림 II-7] 연령별, 학력별, 직업 훈련 참여율 · 31
  
- [그림 III-1] 평생학습계좌제 지원 체제 · 47
- [그림 III-2] 평가인정체제 · 51
- [그림 III-3] 체제개선 전·후 비교 · 62
- [그림 III-4] 평생학습계좌제 운영도 · 79
  
- [그림 IV-1] 경력개발과정 · 95



## 【요약】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인재대국 전략에서는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실천과제 중 지속적인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학습계좌제의 시범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가 각각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는 근로자(구직자 포함)를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기초소양, 민주시민교육, 학력취득 프로그램의 학습비 지원과 학습이력을 누적 관리하는 제도이다. 한편,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근로자(구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직무관련 훈련비 지원과 훈련이력을 누적 관리하는 기제이다. 따라서 양 부처 간 업무중복의 최소화 및 책임 있는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평생학습이 소관부처 분야별로 파편화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국정과제인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은 2012년 하반기까지 추진시한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가 공동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정에서 양 부처의 사업을 통합하는 일은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지원 대상 및 영역 확대에 따른 평생학습계좌제 도입방안을 위한 단계별 실천과제를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 전략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는 평생학습 내용, 지원 대상자, 지원방식, 중장기 재정 소요 추정과 관리체제 및 양 부처의 시범사업 운영 기초분석을 통하여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의 의의와 중장기 단계별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평생학습계좌제의 이론적 배경 분석 및 관련된 제도와 추진 실태를 분석하였다. 둘째, 유럽과 미국의 평생학습계좌제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보고, 도입 당시의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보았다. 셋째, 평생학습계좌제 소요예산을 추정하였다. 넷째,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의 의의 및 실천과제와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서 문헌연구 및 기존 정책 자료 분석,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부처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 지역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운영 지역 및 평생학습도시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평생학습계좌제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한편, 미국 워싱턴주의 평생학습계좌제 담당 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방안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 평생학습 전문가, 정부 관계자, 기업체 인사, 지방자치단체 훈련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 내용, 지원대상자, 지원방식, 중장기 재정 소요 추정과 관리체제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의 사업 분석을 통하여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의 단기적인 실천과제와 중장기 단계별 도입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 2.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 평생학습계좌제의 비교 분석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는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해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평생교육법 제23조)이며,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근로자(구직자 포함)가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처 등 훈련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 사업 영역 내부의 체계적인 완결성 및 영역 간 유기적 연결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습비 지원, 학습이력 관리, 학력인정 및 자격·고용연계와 같은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평생학습계좌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 및 미국의 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 재정 공동 지원 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해관계자, 국가를 비롯하여 기타 공동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재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직업능력개발의 현실화, 기업의 혁신과 대응활동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격변하는 작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실무적 수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영국과 미국의 평생학습 재정지원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자 문제로 한 때 프로그램이 중단된 영국의 사례의 교훈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 국가적인 측면에서 평생학습 진입 불평등, 특히 초기학습의 혜택을 적게 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1986년 내국세법을 개정하여 평생학습계좌제법을 제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08년 현재까지도 미국 상원에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평생학습계좌제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많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여론 수렴 등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따른 소요재정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연차별 평생학습계좌제 확대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는 연구자가 제시한 것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의 향후 단계별로 학습비 지원 확대 방안과 소요 재원을 추정한 것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평생학습계좌제의 단계별 도입방안에 근거한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학습비 지원 대상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학습비 지원 해당자를 전체 해당자에서 각각 20%, 10% 및 5%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였다. 전체 학습비 지원 대상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방안 중 제시한 학습비 지원 대상을 관련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1인당 학습비 지원액은 현재 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 적용 시 200백만원(본인 부담 20%)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80만원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1인당 학습비 지원 단가인 80만원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노동부의 지원 단가를 적용할 경우는 2배에 해당하는 소요 예산이 추정된다.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을 전체 해당 지원자를 20%로 산정하여 적용한 추정 예산액은 1단계 기간에는 19만 명, 15,200,000만원이 추정되며, 2단계 기간에서는 161만 명 128,800,000만원, 마지막 3단계 기간에는 384만 명, 307,200,000만원 예산이 추정된다. 한편, 10%로 산정하여 적용한 추정 예산액은 1단계 기간에는 9만 명, 7,200,000

만원이 추정되며, 2단계 기간에서는 80만 명 64,000,000만원, 마지막 3단계 기간에는 192만 명, 153,600,000만원 예산이 추정된다.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을 전체 해당 지원자를 5%로 산정하여 적용한 추정 예산액은 1단계 기간에는 4만 명, 3,200,000만원이 추정되며, 2단계 기간에서는 40만 명 32,000,000만원, 마지막 3단계 기간에는 96만 명, 76,800,000만원 예산이 추정된다.

#### 4.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위한 단기적 실천과제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위한 실천과제를 단기적인 실천과제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인 실천 과제로 첫째, 시범사업의 체계적인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성과를 전문연구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학습비 지원 방식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학습비 지원 방식을 통일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 부처의 사업 목적, 사업대상, 전달체계 등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용어의 통일보다는 부처별로 사업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원 대상은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기 지원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 경우에도 사업대상·목적 등의 중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학습내용의 문제에 있어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초점이 되는 경우, 노동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계좌라는 취지가 명확해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제도 시행 초기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을 문해교육 뿐 아니라 컴퓨터와 같은 기초

적이며 일반적인 직업 관련 훈련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섯째, 학습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방식을 도입 초기에 있어서 일단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재원 조달에 있어서 평생학습계좌제를 위한 재원은 정부의 일반 재원에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이해 당사자, 전문가,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재정운영계획 내에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평가인정 및 학습비 지원 대상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어떠한 종류의 평생학습계좌제이건 간에 공통적으로 표면화되는 것은 학습자의 종합적인 이력관리이다. 이력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무슨 이력을 관리할 것인지, 그 범주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학력인정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정규 학제에서의 학력인정 기준을 반영한 학습경험이 취사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요구분석, 요구 분석에 대한 교육과정 선정,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기존 직무 분야 유경험자에 대한 인정 기준 작성 등의 세부 사항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평가인정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평생학습계좌제 실시 이전에 학습계좌에 포함될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강사들의 선정에 대한 평가체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만들어야 한다.

여덟째, 자격과의 연계 및 자격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자격과의 연계는 노동시장에서의 자격이 신호기재로서 불충분성, 자격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가기술 자격의 등급 내 난이도 상이성, 각종 자격을 아우르는 국가시스템의 부재, 민간 자격의 난립과 난이도 일관성 유지의 실패 등 실제로 학습계좌제와 자격과의 연관을 위하여 사전에 조사 및 분석해야 할 선행 작업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 5.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 실천과제

중장기적인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위한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의 업무 조율 및 연계방안에 대한 모색을 해야 한다. 평생학습계좌제의 추진계획 상 가장 문제가 되고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이미 노동부가 직업훈련 분야에서 평생학습계좌제와 유사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운영하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와의 업무 조율 및 연계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전략 14(교육복지 확대)의 과제 70에서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 과제에서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의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 부처가 각자의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양 부처가 각각 현재 시범 사업 추진 과정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 평가를 실시해서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합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는 평생학습진흥원,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기관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평생학습결과의 누적관리를 위한 행정 기술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스템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력관리는 상담 기능이 포함되므로 시스템이 연계되면 불필요한 중복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결과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의 참여도 필요하다.

셋째,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전담할 전문기구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지정·활용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계좌제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서는 학습결과의 인정과 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누

적기록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전산망 및 평생학습계좌제의 전반적 사업을 담당할 담당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양부처가 주관이 된 평생교육계좌제 협의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상위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각각 해당 부처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두 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위해 태생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평생학습계좌제 전담 기관으로 지칭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 방안이 될 것이다. 이는 평생학습사회를 지탱하는 대안적 직업능력개발과 교육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기관으로서 위상과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평생학습계좌제 사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및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평생학습계좌제에 참여할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 및 시도교육청·평생학습관, 평생교육기관·시설 간 담당업무 합리화 및 파트너십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센터, 고용지원센터, 교육청,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 지원 전달 체계 간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인적·물적으로 평생학습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교, 전문대학을 지역 내 평생학습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한 훈련기관, 업종별 협회, NGO 등 역량 있는 민간 기관을 평생학습계좌제 공급기관으로 삼아 참여를 유도하고 각 기관 간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평생학습계좌제 시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평생학습계좌기금 확보를 통해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자격체제와 연계하여 누적된 학습결과의 활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학습계좌제 관련 예산을 추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추정한 소요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예산이며 확보 방안이 구체화되기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여섯째,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교육과 학기술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평생학습계좌제 협의체에서는 학습계좌제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면서 학습계좌제를 평생학습계좌제로 혼용한다면 제도상의 큰 모순이 따를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제도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근거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법에 계좌제를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따라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 부처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을 포함한 사업은 각 부처의 개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령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평생학습계좌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일곱째, 자격체제와 연계하는 구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격체제와 평생학습계좌제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습결과와 자격체제 모색, 학습경험의 개별자격으로 인정과 국가자격체제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여덟째, 체계적인 연구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은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시범 사업의 합리적 성과를 측정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점은 평생학습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으로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행하기 위한 실제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동 주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가 각 부처의 특성을 살리고자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계좌제의

학습비 지원 대상을 최소화로 통제해 사업 예산을 추정해본 결과에서도 엄청난 예산의 부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예산 확보 정책 등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기 전에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국정과제 수행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결국, 제도 도입에 따른 연구와 시범 사업 평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도입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학습비 지원과 학습이력을 통합·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의 도입은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학습 선택권 및 학습투자 확대로 ‘2080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평생학습사회에서 다양한 학습경험의 제공과 관리를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 학습자의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과 다양한 학습에 참여 확대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성인의 평생학습 현실은 ‘낮은 참여율’, ‘낮은 직무 관련성’, ‘낮은 질적 수준’, ‘참여 격차’ 등의 문제제기와 지속적인 평생고용 가능성의 제고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인(25세~64세) 평생학습 참여율은 23.4%(2007, OECD)로써 OECD 국가 평균 44.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직무관련 평생학습참여율은 14.1%로써 OECD 평균 37.1%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생애에 걸친 자기주도적 능력개발과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여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평생학습 공급기반 확대 및 통합적인 교육훈련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평생고

## 2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방안 연구

육센터, 고용지원센터, 교육청,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 지원 전달체계 간 유기적 연계 시스템 구축, 정규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 평생교육 공급기관에 대한 질 관리 및 인증평가를 통한 통합적인 평생교육 공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국민의 평생학습 촉진과 학습결과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평생학습과정에서의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와 학습경험의 누적관리를 통해 국민의 평생학습 및 계속교육 촉진, 개인의 다양한 평생학습 경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학습결과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학습결과에 대한 노동시장으로서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및 직무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촉진 필요, 직무 관련 평생학습의 참여 결과를 노동시장으로 연계하여 학습결과의 노동시장 이행성 강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습비 지원 및 학습이력 통합 관리를 통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자립 및 자활할 수 있는 학습기회 제공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2008년 10월 정부는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정책 여건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체계화된 국정과제의 틀은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국가 비전 전략으로 新발전체제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I-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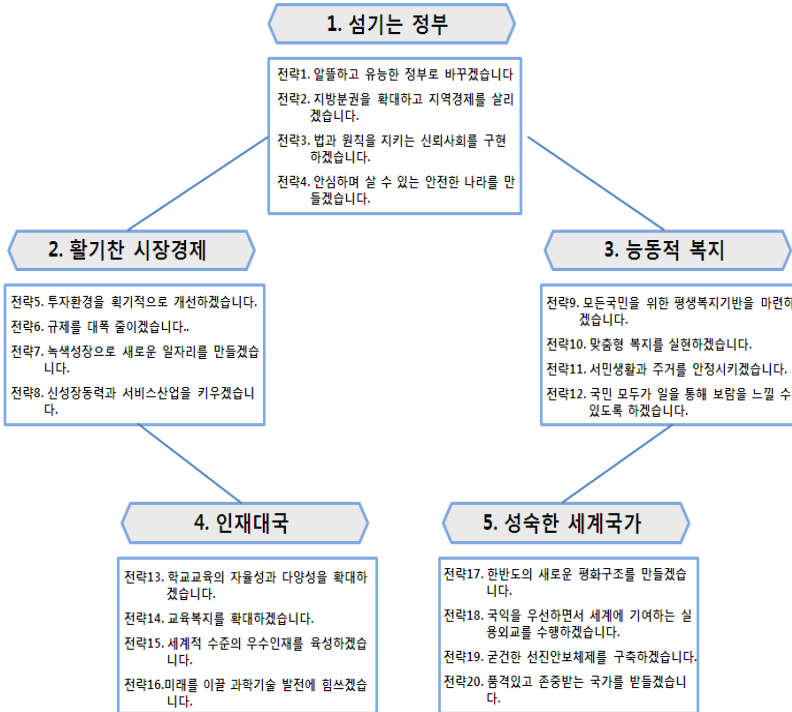
[그림 I-1] 새 정부의 국가발전전략 체계



자료: 대한민국정부(2008).

새 정부에서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 5대 국정지표, 20대 국정 전략, 100개 국정과제와 900여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I-2 참조). 새 정부는 5대 국정지표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 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I-2] 새정부의 국정지표 및 국정과제 구성체계



자료: 대한민국정부(2008).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인재대국의 추진 방향을 구발전체제와 신 발전체제를 비교하면 <표 I-1>과 같다.

인재상에서 산업화 시대 범용 인력 양성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창의적 인재 양성과 공급자 중심의 교육내용을 수요자 중심과 평생교육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획일적, 평준화에서 다양화, 경쟁과 개방으로, 교육행정에서는 관치에서 자율과 분권으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lt;표 I-1&gt; 새정부 국정지표 ‘인재대국’의 추진 방향

구 분	구 발전체제	신 발전체제
인재상	산업화 시대 범용 인력 양성	지식정보화 시대 창의적 인재
교육내용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교육제도	획일화, 평준화	다양화, 경쟁과 개방
교육행정	관치	자율, 분권

자료: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인수위백서. p. 45.

이 중 인적자원정책과 관련이 있는 국정지표인 “인재대국”에 대한 구체적인 4대 국정전략은 다음과 같다(대한민국정부, 2008).

첫째,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둘째 교육복지 확대, 셋째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인재육성, 넷째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발전에 한층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인재대국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표 I-2> 참조).

<표 I-2> 새정부 국정지표 ‘인재대국’의 전략목표 및 국정과제

전략 번호	전략	과제
13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61)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62)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겠습니다. (63)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64)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알차고 흥미 있게 바꾸겠습니다. (65)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4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66)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7) 학력을 높이고 교육격차는 줄이겠습니다. (68)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69)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70)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15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71)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겠습니다. (72)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73)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74)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겠습니다. (75) 체계적인 영재육성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16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76) 과학기술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7) R&D 시스템을 민간 전문가 주도로 바꾸겠습니다. (78) 기초원천연구를 진흥시키겠습니다. (79) 녹색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80) 과학문화의 생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대한민국정부(2008).

인재대국 전략 15개 중 국정과제 70에서는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실천과제로 지역 사회와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일·교육·훈련 자격의 연계 강화, 맞춤형 산업기술 인력 양성 및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한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해 평생학습계좌제는 현재 유사한 제도가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는 근로자(구직자 포함)를 제외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직무기초소양, 민주시민교육, 학력취득 프로그램의 학습비 지원과 학습이력을 누적 관리하는 제도이다. 또한,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근로자(구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직무관련 훈련비 지원과 훈련이력을 누적 관리하는 기제이다. 따라서 양 부처 간 업무중복 최소화 및 책임 있는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영역 설정의 명확성과 학습자의 입장에서 평생학습이 소관부처 분야별로 파편화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연계성이 필요하다. 즉,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간 중복을 방지하고 양 제도간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부처 간의 업무 특성으로 인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국정과제인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은 2012년 하반기까지 추진시한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가 공동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양 부처는 평생학습계좌제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양부처 협의회에서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양 부처 사업(학습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을 하나의 용어로 포괄하는 것보다 부처별 특성을 반영하는 적합한 용어 사용을 합의하고 있다. 이렇듯, 양 부처의 사업을 통합하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은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단계별 평생학습계좌제 지원 대상 및 영역 확대에 따른 평생학습계좌제 도입방안을 위한 실천과제는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 전략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는 평생학습 내용, 지원 대상자, 지원방식, 중장기 재정 소요 추정과 관리 체제 및 양 부처의 시범 사업 운영의

기초 분석을 통하여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의 의의와 중장기 단계별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 연구의 내용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1)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이론적 배경 분석 및 관련된 제도와 추진실태 분석

평생학습의 환경 변화의 추세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재까지 평생학습 지원 정책 및 체제의 한계점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의 평생학습계좌제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비교하여 각각의 특성들을 비교 분석하고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았다.

또한, 평생학습계좌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 평생학습 계좌제 추진 성과 및 사업현황을 분석한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시범 사업이 초기 시험 사업 단계이지만 그 수준에서 양 부처 사업의 진행 상황 분석과 양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 (2) 외국의 평생 학습계좌제 관련 사례 분석

유럽과 평생학습이 발달된 미국사회에서의 평생학습계좌제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보고,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한 관점을 탐색해 보았다.

### (3) 평생학습계좌제 소요 재정 추정

턱없이 부족한 평생학습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소요 예산을 추정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학습비 지원 대상을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파악된 대상자 수를 임의 비율(20%, 10%, 5%)로 계산하여 평생학습 계좌제 단계별 도입 기간에 소요 추정액을 산출하였다.

### (4)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의 의의 및 실천과제와 향후 정책과제 제시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의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 방향, 도입을 위한 실천과제에 대하여 논의해 본다. 또한, 평생학습계좌제 추진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 (1) 문헌연구 및 기존 정책 자료 분석

선행연구,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의 정부 정책 자료 및 평생교육법, 직업훈련 관련법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학습계좌제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추진배경과 추진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미국 및 EU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계좌제와 유사한 제도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 전문가협의회 개최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부처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학계, 현장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계

좌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 (3) 면담 조사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개발계좌제 시범 지역 수혜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운영 지역 및 평생학습도시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평생학습계좌제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본 연구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였다.

### (4) 평생학습계좌제(Lifelong Learning Accounts: LILAs) 시행 국가 전문가 면담 조사

미국은 1986년 제정되었던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을 2007년 평생학습계좌제법(Lifelong Learning Accounts Act: LLAA)으로 개정하여 현재 일부 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운영 현황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위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시범 운영 주인 워싱턴주를 방문하여 평생학습계좌제와 관련된 주정부, 시정부, 노동조합, 대학,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의 담당자와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5) 토론회 개최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전문가, 정부 관계자, 기업체 인사, 지방자치단체 훈련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본 연구는 평생학습 내용, 지원대상자, 지원방식, 중장기 재정 소요 추정과 관리체제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의 사업 분석을 통하여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의 원칙과 중장기 단계별 도입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의 평생학습계좌제 실행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 양부처의 절충과 연계된 제도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제 2 장

##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이론적 분석

## 제1절 평생학습계좌제 개념 및 관련 선행 연구

## 1. 평생학습계좌제의 개념

평생학습계좌제의 개념과 유사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교육계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학교 밖의 학습 경험이나 비형식적 교육활동, 나아가서는 일상생활의 교육적 경험과 자기학습의 결과까지도 평가 및 심의를 통해 학점이나 기타 다양한 방식의 혜택을 통해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학점은행제에 경제적인 관점이 가미된 제도이다(김란수, 1997). 최운실(2000)은 온 국민의 평생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그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를 촉발시켜 주며 평생학습 이수 결과를 공식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교육의 총체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개념화 하였다.

또한, 최돈민(2004)은 국가수준에서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 인증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전략 수립과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였다. 한승희(2004)는 성인들이 정규교육과정을 떠나 노동시장 또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수행한 다양한 학습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누적·기록하고 인증함으로써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최상덕(2006)은 학점은행제로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비형식·무형식 학습을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대등하게 인증해서 그 결과로서의 학점(credit)을 기록하고 누적·관리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최근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평생학습계좌제 협의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상위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습결과를 주관 관리하여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개인이 평생에 걸쳐 교육받고 학습을 하는 내용을 누적하여 기록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가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에서의 학습계좌제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표 II-1> 참조).

&lt;표 II-1&gt;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습계좌제의 법적 근거

법률 조항	내용	비고
평생 교 육 법 제23조	제23조(학습계좌)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생 교 육 법 시 행 령 제14조	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개정2008.2.29>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개정2008.2.29>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4항 <개정2008.2.29>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5항 <개정2008.2.29>
평생 교 육 법 시 행 규 칙 제4조	(학습계좌제의 운영) 영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 5. 기타 특기할 사항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법적인 체제에서는 “평생학습계좌제”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학습계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습계좌제 실시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정과 재정지원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I-2>는 학습계좌제 도입에 따른 신규 평생교육법을 비교한 것이다. 신 평생교육법은 구 평생교육법의 교육계좌제를 학습계좌제로 변경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II-2> 평생교육법 신규비교 : 학습계좌제 관련

구분	구법	신법
평생 교육법	제16조 (인적자원의 활용) ②국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학습계좌) 국가는 국민의 평생 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생 교육법 시행령	제4조 (교육계좌제의 운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이하 “교육계좌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의 개설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에 수록된 정보에 관한 열람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의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계좌제의 운영업무를 교육·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평생 교육법 시행 규칙	제3조 (교육계좌제의 운영) 영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직장교육훈련 및 평생교육이수실적 5. 기타 특기할 사항	제4조 (학습계좌의 운영)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 2.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선행 연구

평생학습계좌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권두승(2008)은 평생학습계좌제 실행 방향 및 제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으로 학습계좌제에서 평생학습계좌제로의 개념 전환, 평생학습계좌제 추진체계, 평생학습계좌제 운영방법, 평생학습계좌제 학습비 지원방법 및 단계별로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법조항(법 제23조 제1항)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학습계좌 명칭을 평생학습계좌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영(2008)은 평생학습계좌제 추진에 있어서 관련 주요 이슈와 평생학습계좌제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내용, 지원대상자, 지원방식, 재원조달, 관리체계 및 제도 오남용 방지와 성과 평가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재정 소요 분석에 있어서 재정 소요 추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운실(2008)은 평생학습계좌제 시행을 위한 발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앙차원의 학습관리 운영 센터의 구축, 둘째, 학력과 연계를 통한 교육복지 체제구축, 셋째, 자격체제와의 연계체제 구축, 넷째, 학습비용지원과 결과 활용 체제 구축,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학습 결과 평가 인정 체제 수립 등이다.

변종임 외(2007)는 교육계좌제 추진 방안 연구에서 교육계좌제 실행기구의 역할과 기능, 평가인정의 다양한 방안, 교육계좌제의 운영 절차와 결과 활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계좌제 추진을 위한 발전 과제로서 중앙 정부 차원의 학습이력 관리를 통한 학습지원체제의 구축, 학력과 연계를 통한 교육복지 체제 구축, 자격체제와의 연계 체제 구축, 학습비용 지원과 결과 활용 구축 및 효율적 학습결과 평가인정체제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단계별 실행절차를 제시하면서 1단계는 시범운영 단계, 2단계는 정책실행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체제 구축, 3단계는 전담 관리운영기구 조직 및 운영, 마지막으로 교육계좌제 시행을 제시하고 있다.

나영선 외(2005)는 지역수요밀착형 및 취약계층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인훈련계좌제 시범 적용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의 개인학습(훈련)제도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시범 적용 방안을 위해 기본방향, 타깃집단별 시범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받은 뒤 노동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기존제도와 다른 점은 일종의 바우처(voucher) 시스템 원리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에게 일정한도(1년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내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원하는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남철 외(2003)는 미국, 영국, 스웨덴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학습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s)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개국의 평생학습비 지원 제도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으로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 공동 지원 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해관계자, 국가를 비롯하여 기타 공동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직업능력 개발의 현실화, 기업의 혁신과 대응활동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고용자가 아닌 고용주가 부담하는 영국의 개인 수업료계좌(Individual Tuition Accounts) 시스템은 성인실험교육위원회(CAEL; Council on Adult and Experiential Learning)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700개 이상의 단과대학, 종합대학, 기업, 노동조합, 개인들이 회원으로 확보되었으며, 고용주와 교육 및 훈련 전략을 공동으로 논의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용인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요구를 조연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에 대한 개인의 노력과 정부, 기업의 재정 지출도 장려하는 제도

의 조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으나 현 시점의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

김란수 등(1997)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교육구좌제 도입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육구좌제의 개념 모형 정리, 이론적 분석 및 국내외 교육구좌제 관련 유관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교육구좌제 장단기 실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실시시기, 실시범위, 실시 대상, 실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교육계좌제 실시에 꼭 필요한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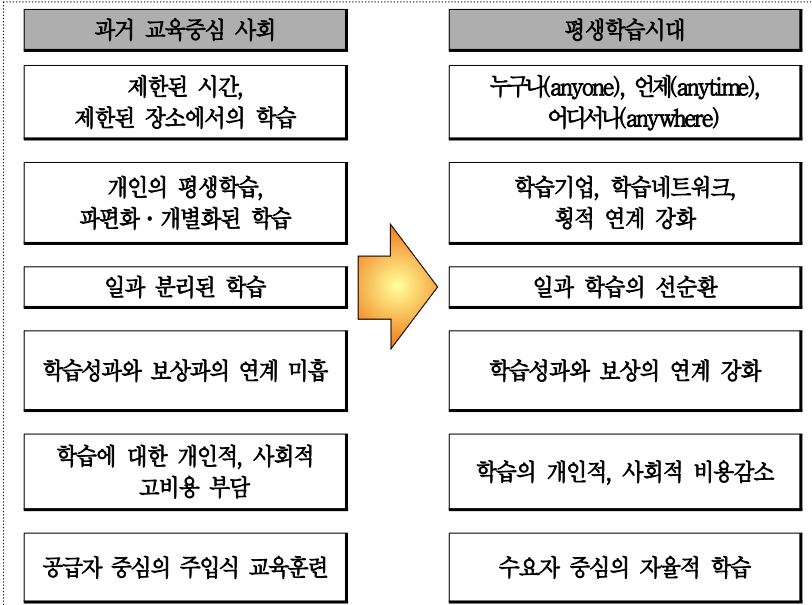
## 제2절 평생학습 정책의 환경변화

### 1. 새로운 사회와 문명으로서 평생학습시대의 도래

평생학습은 학령기에 놓친 교육 기회를 보상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환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한 새로운 사회와 문명으로 평생학습시대가 도래되었다. 특히, 경제체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정치체제는 봉건왕조에서 국민국가, 민주사회로, 사회적 인정체제는 혈통에서 학력(졸업장)에서 수행능력(학습인증)으로, 사람을 보는 관점은 비용의 인구(人口)에서 근력의 인력(人力), 재능의 인재(人才)로, 문명사적 변화의 중심이동에 직면하고 있다.

[그림 II-1]에서는 과거의 교육중심 사회에서 평생학습 시대로의 이행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의 교육중심 사회에서 행해지던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에서 학습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사회로, 일과 분리된 학습에서 일과 학습의 선순환 구조로 변화, 공급자 중심의 주입식 교육훈련에서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학습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학습 성과와 보상의 연계가 미흡하였으나 평생학습 시대에는 학습 성과와 보상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그림 II-1] 평생학습 시대로의 이행



자료: 김장호 외(2005).

## 2. 사회·경제패러다임의 변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식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 사회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창조성은 자유와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평생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21세기 국가 정책의제이다.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국가의 경쟁력을 국가가 가진 인재, 기술, 관용성을 포함한 창조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창조성 지표(Global Creativity Index: GCI)는 45개국 중 16위, 창조적 계층을 보유한 정도인 창조적 인재(Global Creative Class: GCC)는 39개국 중 38위로 제시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 과거의 부가 경작(glowing)과 제조(making)에서 나왔다면, 미래의 부는 창의적 사고(thinking)에 달려 있다고 예언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경제적 패러다임은 3차 산업 중심에서 창조적 산업(R&D, 출판, 소프트웨어, TV와 라디오, 디자인, 음악, 영화, 장난감 및 게임, 광고, 건축, 공연예술, 공예, 비디오 게임, 패션, 미술 산업을 포함)으로 변화하고 있다. 창조적 산업은 미국 산업분야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경제 수익의 47%를 창출 하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조 산업분야의 인력 수요 급증이 전망하고 있다(Richard Florida, 2006). 리처드 플로리다에 따르면 인력수요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컴퓨터, 과학, 기술 분야로, 5년 후에는 컴퓨터 및 반도체 제조 관련 기술자, 행정·경영 재정 전문가의 인력수요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 및 노동수요 변화에 따른 창조적 지식 근로자 양성을 위해서는 창조적 지식의 창출-교환-활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터의 학습조직화와 유연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3. 인구패러다임의 변화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의 질적·양적 변화가 전망된다. 평균 수명의 증가(20세기 초 31세 → 21세기 초 78.63세)에 따른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06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9.5%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표 II-3> 참조).

## &lt;표 II-3&gt; 고령화 속도 국제비교

(단위: 연도, 연수)

국가명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7% (고령화 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7%→14%	14%→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18	115	39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한 국	2000	2018	2026	18	8

따라서 노인의 학력, 건강, 경제력, 활동분야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로 인한 적극적인 노령화(Active aging)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인구 정책, 기존 인적자원의 질적 고도화, 학제·교육과정·평생교육 체제 등 총체적 교육체제 개혁이 요구된다.

## 4. 글로벌(Global) 패러다임의 변화

세계가 하나로 되는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교육시장 개방과 국경을 넘나드는 교육활동 결과로써 국제적 통용성 확보, 교육체제의 유연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통용될 수 있는 교육체제·인증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의 교육경험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등 평생학습의 개방화 및 국제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 간, 지역 간, 지역 내 평생교육 시설 및 기관, 평생교육 내용 등 평생학습 자원 간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원활한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 제3절 평생학습의 현황과 문제점

####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사업 추진 미흡

첫째, 한시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사업 위주의 지원·추진으로 기존에 해오던 평생학습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개별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축제”, “평생학습도시조성”, “소외계층 및 성인문해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 위주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평생교육 지원·추진 기구의 내재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센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 등은 대부분 기존 기관에 기능과 사업을 추가한 불완전한 체제를 이루고 있다.

셋째, 평생교육 관련 타 부처 및 일반 지자체와의 연계에 한계점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소관 업무 분장에 따른 부처 간, 부서 간 정책 조정 및 연계에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정책고객의 관점에서는 국가·지역인적자원개발, 문화예술교육 등 관련 정책, 제도와의 공동 사업 추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실정이다.

#### 2. 평생학습 예산규모 부족

평생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07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접적인 평생교육 예산(담당부서 예산)은 166억 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전체 예산(310,447억 원)의 0.05%에 불과한 수준이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 인구(학령기 인구 변화 추세는 '05년 779만 명, '06년 777만 명, '20년 536만 명, '50년 326만 명)에 교육 예산의 99.95%를 투입하는 전륜구동형(Front-loaded)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불균형적인 교육재정 구조로 인해 평생교육 이념 실현에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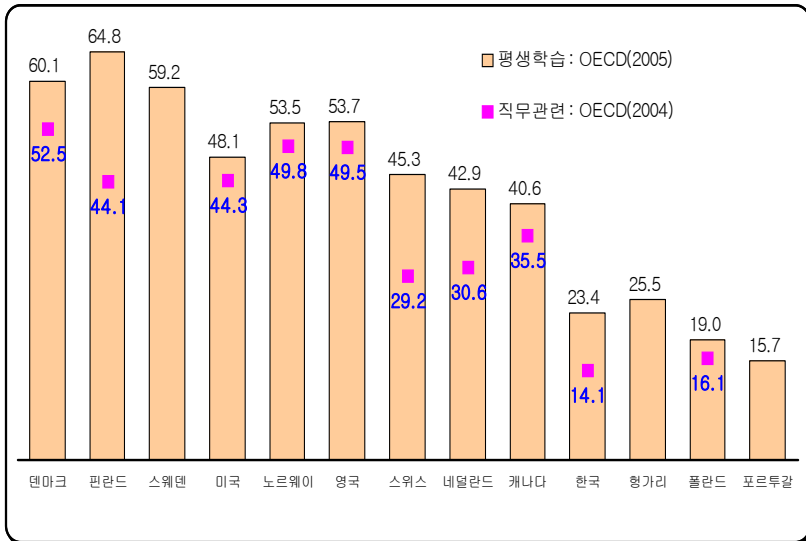
또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부의 낮은 재정투자는 2006년 1조 6,550억 원

으로 GDP대비 0.2%에 불과하고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연 6만 9천원 지원 수준이다. 동 시기의 초·중등교육 3조 1천억 원, 대학재정지원(2005년 기준)은 4조 4천억 원 등 학령기 투자에 비해 투자규모가 매우 적음을 볼 수 있다.

### 3. 선진국에 비해 낮은 평생학습참여율과 학력 간 참여율 격차 심화

평생학습 참여율의 단순한 국제비교는 어려우나 OECD 발표 평생학습 참여율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평균 35.5%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2005년도 평생학습 참여율은 23.4%로 핀란드 64.8%, 덴마크 60.1%, 스웨덴 59.2%, 영국 53.7%, 노르웨이 53.5% 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림 II-2] 참조).

[그림 II-2] 주요 OECD 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통계협력망), 통계로 본 인적자원 동향, 개인용.  
 주: 25-64세 기준 국제성인문해조사(IALS) 결과로 우리나라는 2004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8-64세 성인 9,5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성인

의 평생학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전국 평균 20.1%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경북이 35.4%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광주와 대전이 가장 낮은 12.6%를 나타냈다. 그 밖의 지역별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서울 18.1%, 부산 15.4%, 인천 19.2%, 울산 24.1%, 경기 25.4%, 강원 22.4%, 충북 18.9%, 충남 17.2%, 전북 17.8%, 전남 20.6%, 경남 15.2%, 제주 29.7%를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직무와 관련된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근로자 25~64세 기준으로 OECD 평균은 37.1%이며, 한국 14.3%, 영국 49.5%, 미국 44.3%, 덴마크 52.5% 수준이다.

#### 4. 시장수요와 공급프로그램의 괴리

실제 평생학습을 받은 분야와 희망하는 분야 간에 불일치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어학 등은 초과수요를 나타낸 반면 사무관리, 서비스 등은 초과공급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의 경우 수요 25.8%, 공급 14.9%, 어학은 수요 15.8%, 공급 3.9%, 사무 관리는 수요 23.9%, 공급 43.0%, 서비스는 수요 8.7%, 공급 9.1%로 큰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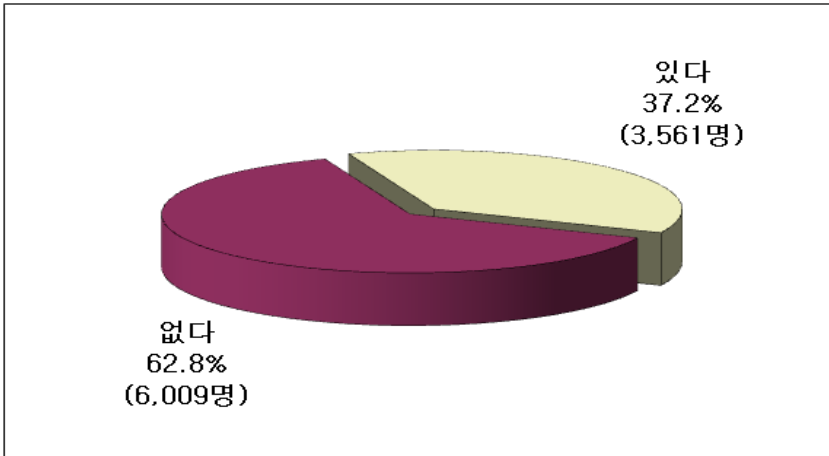
#### 5. 당위에만 머무르고 있는 평생학습

많은 선진국의 경우 평생학습이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성장과 통합을 위한 활동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 중요성과 필요성이 “선언(Rhetoric)”을 넘어 “현실(Reality)”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실천 과제들을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 관심에 비하여 학습 주체들의 학습 참여와 요구도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평생학습 참여 의향 조사에 따르면 9,570명 중

62.8%(6,009명)가 참여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37.2%만이 평생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그림 II-3] 참조).

[그림 II-3] 평생학습 참여 의향



또한,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의 비율은 73.7%에 달하고 있다(노동부, 2007). 직업능력개발을 희망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52.2%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6.2%였다.

## 6. 평생학습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

평생학습 논의는 크게 효율성과 경제적 보상 대비 형평성과 개인, 사회 및 지역 발달 두 축으로 논의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학습자) 입장에서는 통합된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II-4>는 평생 학습에 대한 접근 방법을 고용가능성 제고, 개인발달, 사회발달, 지역발달 관점에서 강조점과 논쟁/성과를 비교한 분석한 것이다.

&lt;표 II-4&gt;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 방법

목표	고용가능성 제고	개인발달	사회발달	지역 발달
강조	고용가능성 촉진	개인의 자율성, 독립심, 비판적 성찰 강조	정치, 사회적 참여, 민주정부, 정치적 안정 등에 기여	지역발달의 유효한 역할을 평생학습이 담당
논쟁/성과	도구적, 고용가능성 제고와 같은 직업 지향적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학습을 통한 지적 발달을 포기	소수 기득권 집단의 전유물로 서의 학습, 경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한계를	HRD는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인 형평성, 정의, 양성평등, 사회적 책임 등을 놓치고 있음	지역이 학습, 혁신, 생산성, 경제적 성과 등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 (OECD 실증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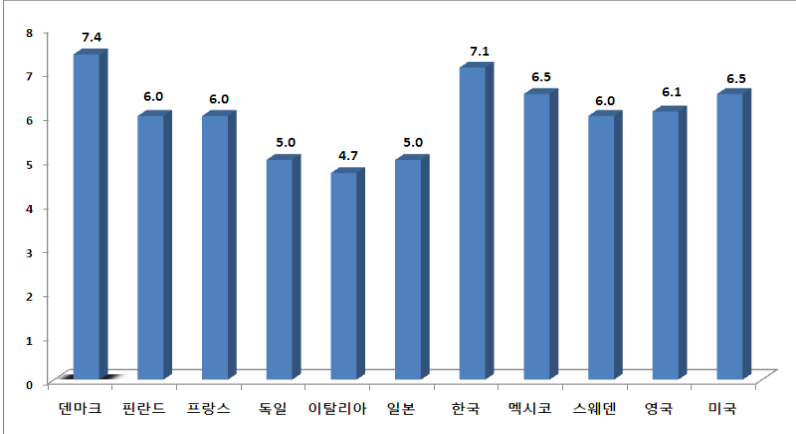
자료: ILO(2003). Lifelong learning in Asia an the Pacific.

## 7. 학력기 과다투자 /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투자 미흡

[그림 II-4]의 OECD 발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학력기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기 교육기관에 대한 GDP 대비 교육비 투자(공공 및 민간)는 OECD 국가 중 미국(7.4%)에 이어 덴마크와 공동 2위(7.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4] 학령기 교육기관에 대한 GDP 대비 교육비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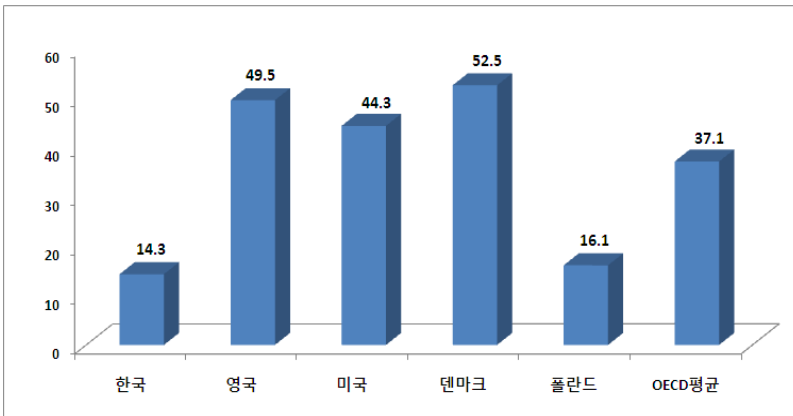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2008), Education at a Glance(2005년 기준).

그러나 [그림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직무훈련 참여율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14.3% 수준이다. 반면에 덴마크는 가장 높은 52.5%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영국은 49.5%, 미국 44.3%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II-5] 근로자 직무관련 훈련 참여율 비교



자료: OECD(2004).



## 8.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감소

교육훈련은 투자의 개념이 아닌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함에 따라 기업 총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투자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 투자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치중되고 있다(<표 II-5> 참조).

<표 II-5>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연 교육훈련비

구분	10~29인	30~99인	100~299 인	300~499 인	500~999 인	1,000인 이상
'04년	60,000	84,000	144,000	259,000	300,000	732,000
'05년	48,000	96,000	120,000	296,000	336,000	828,000

자료: 노동부(2007).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 9. 개인 주도 학습 지원 시스템의 미비

인적자원개발을 둘러싼 여건은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책임을 개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활의 연장, 기술변화의 가속화, 평생 직장 대신 평생직업 시대 도래, 기업의 능력 중시 고용관행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은 인적자원에 투자할 유인 감소, 자체 개발(make)보다는 외부조달(buy)하는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어, 노동부의 근로자 수당 지원금, 근로자 학자 대부 및 유급훈련휴가 등 개인주도 학습지원제도는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표 II-6> 참조).

<표 II-6> 노동부 개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단위: 명,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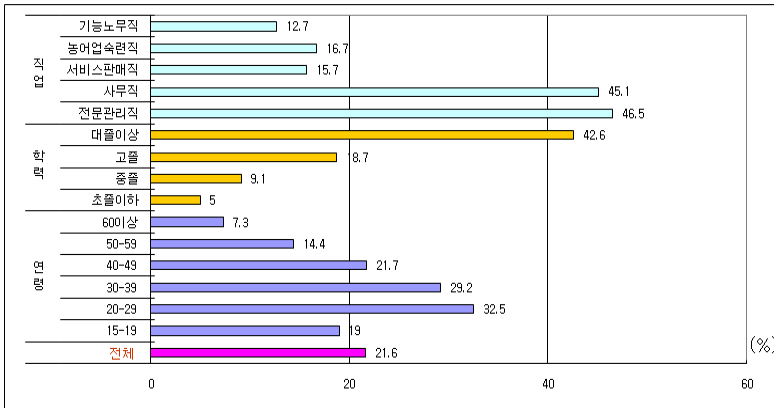
구분	근로자수강지원금	유급휴가훈련
훈련인원	155,620	5,941
지원금액	28,851,000	10,419

자료: 노동부(2007). 노동백서.

### 10. 직업, 학력, 연령별 평생학습 기회의 불균등

평생학습 참여기회는 사무관리직, 고학력, 20-30대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중고령자, 저학력, 저숙련 근로자의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그림 II-6] 참조).

[그림 II-6] 직업, 학력 및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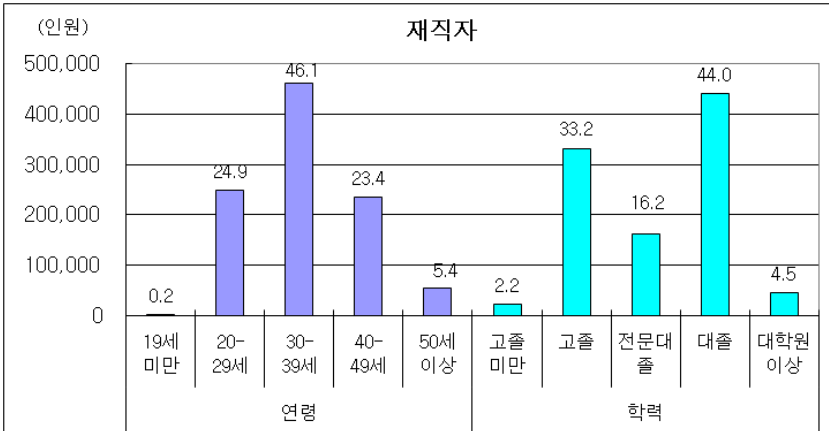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4). 사회통계조사.

## 11. 직업훈련기회도 불균등

연령별, 학력별 직업훈련 참여 기회가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서는 30~39세가 가장 높은 비율(48.1%)을 보이고 있고 40~49세는 매우 낮은 23.4%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력수준에 있어서는 대졸자가 가장 높은 44.0%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33.2%, 전문대 졸업자 16.2%, 고졸이하가 가장 낮은 2.2%를 보이고 있다([그림 II-7] 참조).

[그림 II-7] 연령별, 학력별, 직업 훈련 참여율



자료: 노동부(2004). HRD-Net.

## 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투자격차 심화

정부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지원금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II-7> 참조). 1,000인 이상 기업에 고용보험 지원이 집중(55.5%)된 반면, 중소기업은 근로자수 대비 수혜율이 낮다.

&lt;표 II-7&gt; 기업규모별 지원금 비중

기업규모	근로자수	지원금 비중('06년 고용보험)
1,000인 이상	16.5%	55.5%
150인 미만	64.3%	25.6%

자료: 노동부(2007), 노동백서.

### 13. 부실한 평생학습 인프라

대다수 평생교육 과정이 비체계적, 강사위주 수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질 관리 체제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훈련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새로운 훈련 직종이나 수업 방식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학습자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다. 특히, 현재 직업훈련 직종은 사무관리, 금융보험업종에 50~60%가 치중되어 있다.

## 제4절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1)

### 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 강화

지방화·분권화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도 RHRD, RIS 등이 정책화되고 있으나, 아직 지자체의 정책기획 및 관리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미흡한 수준이다. 지자체의 인력강화 문제는 현재 공공부문 인력개발과 관련하여 최대의 현안이지만, 현 상태대로는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이로 인해 분권화의 지연 혹은 기초여

1) 본 내용은 이원덕 편저, “21세기 국가전략(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개발)” 중 이남철의 “지역 평생학습을 강화하자”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건이 미비된 상태하의 분권화와 같은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지역 주체 역량 강화 및 단체장의 리더십 강화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체계적인 평생학습 개발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평생학습 개발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사업에 동참시키는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와 경제상황에 맞는 평생학습 개발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추진체계 및 조직을 정립하는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평생학습의 정책 총괄·조정 조직을 구성하여, 현재 분산되어 시행되는 각종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총괄 및 조정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개발 정책의 연계는 물론 전반적 지역혁신정책의 관련 하에서 평생학습 개발 정책이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개발과 지방정부의 지역 평생학습 개발 기능의 연계를 도모하도록 법적 규정을 정비해야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평생학습 개발 및 활용의 총괄조정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평생학습 개발 및 활용의 총괄조정 권한과 기능을 부여할 때 현재까지 지역 평생학습 개발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던 교육과 학기술부, 노동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누구나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학습기관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학습기관들을 서로 연계해야 한다. 특히 대학은 평생학습의 중심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모든 학습자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학습휴가나 학습비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가 배운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일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학습계좌제나 학점은행제가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더욱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 3. 평생학습 담당 공무원의 의식구조 변화와 전문성 확보

평생학습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의식 변화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적 마인드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훈련과 함께 동일 업무에서의 장기적인 근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를 점검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자들에 대한 정책 자율권 부여가 필요하다. 특히 평생학습과 관련된 자격 연수를 받아 평생교육사<sup>2)</sup>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직 순환 시에 관련 보직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 할 것이다.

###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평생학습 담당 기관들의 파트너십 구축·활용을 통한 평생학습 증진

평생학습의 실질적인 추진 기반은 지역사회이다. 국가적인 수준에서 계획·수립되는 평생학습 정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지역 단위에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여건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구축되어, 이 가운데 성공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국가적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파트너십은 주변 환경의 변화와 참여 파트너간의 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동태적이어야 한다. 지역 차원 파트너십의 경우

2) 평생교육법 제17조 (평생교육사) 참조: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개정 2001.1.29> ②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함.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 활동의 중심이 되는 이해관계 주체들이 바뀌게 되면 이들 사이의 신속하고 적절한 관계 조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태적이거나 경직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 시·도청, 교육청, 대학, 중소기업청, 노동청,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경영자 단체 등 관련 지역의 인적자원 유관 기관에 공동 참여하는 파트너십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지역단위 평생학습 협의체는 지역 내 관련기관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및 지역 평생학습 수립·총괄 조정 등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제공할 수 있다.

### 5. 학습네트워크 구축·활용을 통한 평생학습 증진

지역 평생학습 능력은 주민을 위한 많은 평생학습 기관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키워질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시민, 기업, 대학, 언론, NGO가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인적자원, 물적 자원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로컬 거버넌스를 형성·운영하고,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부녀회, 노인회, 스포츠와 문화 중심의 모임 등의 지역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전체를 묶는 지역공동체 학습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체를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학습 네트워크 구축·활용이 필요하다.

### 6. 평생학습도시<sup>3)</sup>의 지속적 발전 도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역할 제고를 위해서 지역주민

3)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2002. 6)는 평생학습도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 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저,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ing) 운동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간 연계, 지역사회 간 연계, 국가 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크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운동.

을 위한 평생학습 공간과 학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 확대와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협력 기구로 평생교육협의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여야 한다. 지역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평생학습 도시는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지역주민에게 학습지원 체제를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를 위한 학습동아리의 시범사업 추진 및 지원으로 자발적인 학습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성인의 학습 조직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강구와 “평생학습 도시” 운동과 연계한 학습동아리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위하여 시범 지역을 평생학습 도시 중 4~5곳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현 정부 정책이 평생학습 도시의 중요성을 감안한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 7.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한 평생학습 증진

도서관은 평생학습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많은 수의 공공도서관은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본질적인 자료의 효율적 기능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주5일제를 맞이하여 유희한 시설을 활용하여 더 이상 학교만의 시설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를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특정지역 안에 존재하는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활동과 지역사회 간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서관으로써 다른 기관에 비해 풍부한 전문정보 자원과 능력 있는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도서관을 운영해야 하며 지역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김영준, 2006).



도서관에 투자하는 지역사회는 서비스, 테크놀로지, 직원들이 그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준다. 또한, 도서관은 평생학습을 지원해 줌으로써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그들의 소득,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에 있는 도서관은 사용자들이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고, 도서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숙련된 정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아 발견과 평생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 8. 정책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의 관심유도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기업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청년층, 중소기업, 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별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 근로자들의 직무관련 훈련참여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인적자원개발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현장의 애로사항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정부 정책 활용 정도에 관한 조사에서 활용하고 있음(37.4%), 활용하지 못함(62.6%)으로 나타났다.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관심부족(37.2%), 정보부족(28.2%), 적절한 정책이나 제도 부재(26.6%), 기타(8.1%)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미실시 이유로 업무차질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활동과 현장의 애로사항의 해소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고 기업에서도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9. 폴리텍 대학과 지역소재 대학을 통한 지역 평생학습증진

폴리텍대학(Polytechnic Colleges)은 호주,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 세계적으로 “종합기술전문학교” 라는 뜻으로 통용되며, 「한국폴리텍대학 (Korea Polytechnic Colleges)」은 새로운 직업교육 패러다임과 미래지향적이며 역동

적인 이미지, 한국을 대표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는 개혁 의지를 담고 있다. 4개의 특성화대학(여자, 바이오, 항공, 섬유패션)과 권역별로 한국폴리텍 I ~ VII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청, 호남/제주,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대학으로 구분하고 기존의 직업전문학교를 19개 지역캠퍼스로 명칭을 변경 통합 운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폴리텍대학으로 명칭을 바꾸어 지역산업기술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고급화되고 있는 지역교육훈련 수요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도 고등교육기술 과정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폴리텍대학은 지역 산업체와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과 더불어 지역 평생학습 기관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더불어 지역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능향상 훈련의 교육 요구와 일반인의 평생학습 참가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공공재화의 폴리텍대학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지역대학과 같이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증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2년 과정으로, 주력이 직업 교육이다. 하지만 4년 제 대학 등의 편입을 위한 학문 교육과 평생학습 및 성인대상 재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사회 주민을 위해 영어 교육과 댄스와 스포츠 등 다양한 사회체육과정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주민이 학점 인정과 비인정 코스에 등록해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지역에 거점을 둔, 지역민을 위한 종합 학교인 셈이다. 칼리지의 최대 장점은 학비가 싸다는 점이다.

커뮤니티 칼리지에 매우 다양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점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평생 학업 의욕을 고무시킨다.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는 지역사회와 밀접히 연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점이 다른 대학 시스템과는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칼리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시설이나 교육의 질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지방대학 소재 대학 활용을 통한 지역 평생학습 기관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신입생의 감소가 심각한 현실에서 유휴 물적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대학을 지역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하여 평생학습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역 노동청, 중소기업청, 시도교육청,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직업훈련기관 등 지역 평생학습 기관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생학습의 틀에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환경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지역단위의 경제활동과 밀착되는 평생학습을 추진하여야 한다.

#### 10. 근로자의 평생학습권 보장

노동조합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하여 배우는 것이 평생학습권에서 보장하는 평생학습의 일종이다.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유·무급 학습 휴가를 통해 노동조합이나 다른 기관에서 추진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노동조합이 평생교육기관의 일종으로서 사회적·법률적으로 그 위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학습휴가나 학습비 지원, 사내대학, 학점인정제, 교육계좌제 등 평생교육법에 언급된 제도들을 노동자들이 배움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로써 현실화가 필요하다(최선주, 2006).

#### 11. 평생학습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분석을 통한 거시적 성과 측정 및 관련 재정 지원을 연동

주요 선진국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리 길지 않지만 최근에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을 토대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현 시점에 평생학습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 평생학습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거시적인 성과를 추출하여 지역 사회, 문화, 경제 측면과 긴밀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또한, 평생

학습운영 성과 결과에 따라 관련 재정 지원 사업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 3 장

## 현행 평생학습계좌제와 관련 제도 분석 및 추진실태 분석

## 제1절 평생학습 계좌제 추진 경과 및 사업 현황

## 1.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경과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2차안에서 교육구좌제 개념 도입 및 활용 방안 제시(1995. 5.31 교육개혁안)에서는 국민의 평생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교육적 성격의 제도로 교육구좌제의 도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국민의 평생교육, 특히 취업자의 계속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인증된 학습경험과 학교 외 교육 등에서 얻은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기록, 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교육구좌제(Education Account) 도입을 연구, 검토한다. 교육구좌제는 정규 학교교육 이후 모든 국민의 개인 교육정보를 수록한 자료이다. 개인별 교육구좌는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는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홍길동은 실업계고교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직장에 근무하면서 직장연수, 학원, 방송통신교육, 모 대학의 시간 등록 등으로 학습하며, 이수한 내용들을 교육구좌에 기록하여 왔다. 홍길동은 자신의 능력을 더 개발하여 우수한 기술자가 되고자 전문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다. 학비의 일부는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보조받았으나 부족하여 은행에서 학비융자를 받기로 하였다. 은행은 홍길동이 제출한 교육구좌기록 등을 검토한 후 담보 없이 학비를 대출해주기로 결정하고, 대출금은 졸업 후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는 열린교육사회, 열린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하였다. 즉, 국민의 평생교육기회 확대와 평생학습경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가인적자원 개발 촉진 전략으로 제안한 것이다.

1997년 평생교육법 개정 시 교육구좌제를 교육계좌제로 개념을 전환하는 선언적 규정을 도입하였다. 평생교육법 제16조 제2항(1997, 법률 제6400호)에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관리 차원에서 개념 규정 및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 및 국가예산 확보 및 정책 추진 의지의 미흡으로 인해 선언적인 규정으로 그치고 말았다.

교육계좌제 명칭의 사용이 아닌 변형된 “학습결과표준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제1차 평생학습기본계획(2002-2006)상의 교육계좌제를 추진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 및 국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체되었다.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상의 학습계좌제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반영하여 교육계좌제에서 학습계좌제로 변경하였다. 구 평생교육법상에서는 제16조(인적자원의 활용) 조항 부분에서 제2항의 규정에서 “선언적인 규정”으로 제시되었으나, 개정 평생교육법에서는 제23조의 단독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최근 제2차 평생학습기본계획(2008-2012)상의 학습계좌제 추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표 III-1> 참조).

&lt;표 III-1&gt; 평생학습계좌제의 내용 및 목적 현황

	주대상	내 용	목 적
1995.5.31 교육개혁안	국민, 취업자	학습경험의 누적관리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1997년 평생교육법	국민	개인적 학습경험의 집 중관리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2007년 평생교육법	국민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 적으로 집중 관리	평생교육 촉진, 인적자원의 개발과관리
2008년 이명박정부 핵심공약사항	국민	학습경험의 종합관리	-학벌보다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풍토 조성 -고용시장에 활용가능한 정보다 양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습비 지 원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상의 학습계좌제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의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자격체제와 학습계좌제”의 연계로 교육훈련-자격-학력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능력사회 구현 차원에서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학습계좌제의 단계적·점진적 추진 방안은 시범단계, 확산단계, 평가·인정단계 및 전 생애단계별 학습계좌제 완성단계를 거친다.

1단계(시범단계)는 7개 평생학습도시에서 학습결과 누가 기록 등 이력관리·활용을 위한 “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확산단계)는 학습결과 표준화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전국단위의 학습계좌제 실행방안을 수립한다. 3단계(평가·인정단계)는 기존의 고등교육 기관 중심의 학점은행제를 전국적인 학습계좌제와 연계하여, 교육훈련기관, 직장 등에서의 비형식 학습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4단계(전 생애단계별 학습계좌제 완성단계)는 평생학습 참여자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맞춤형 고용정보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완성된 학습계좌제 운영 체제를 확립한다. 학습계좌제 운영 방법으로는 학습계좌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인별 학습 이력 및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개발, 평생학

습도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등에 우선 보급하여, 원하는 학습자 중심으로 시범 활용 및 고용정보시스템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학습-고용 연계를 강화한다.

2007년 한나라당 의원의 개인학습계좌제 도입을 위한 입법발의가 있었다(<부록 1> 참조). 이명박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학습선택권 및 학습투자 확대를 “2080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고 개인 학습결과의 인증,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사회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습비 지원으로 평생교육 참여 및 능력개발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채택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함께 새정부 핵심공약으로 등장한 평생학습계좌제는 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촉진하도록 제시되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는 각자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중복을 방지하고 양 제도 간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평생학습계좌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08.4).

또한, 정부는 “평생학습계좌제협의회” 운영 및 평생학습계좌제 도입방안 공동 추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 실무협의(’08년 5월, 6월, 10월)등 양부처별로 소관과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2. 평생학습계좌제와 관련된 사업 운영현황

정부는 ’95. 5. 31 교육개혁안에서 학습경험의 관리에 대한 탐색적 시도가 제기되었다.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사업은 1차년도 시범사업(2006년도 9월부터 2007년도 8월)과 2차년도 시범사업(2007년도 9월부터 2008년도 6월)이 모두 종료하였다.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운영사업 참여도시 및 운영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III-2> 참조).



&lt;표 III-2&gt;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운영 사업

지자체	운영프로그램
광명시	광명시민대학 중 직업능력개발학부 3개학과(표현예술심리치료학과, 실버정보통신교육학과, 어린이 도서관학과)
이천시	성인문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삼척시	성인문해교육(기초능력교육), 간병인 및 산모도우미교육(직업능력개발교육), 한국무용(자기개발교육), 인형극 지도자 과정(시민성교육)
단양군	단양관광예술대학(관광 전문학사 학습과목 운영 프로그램 명칭)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점부여, 단양군에서 부여계획
목포시	성인기초문해교육, 3세대 레포츠 파크골프(지도자양성 및 일반인보급과정), 서남권아카데미강좌
순천시	학부모스쿨, 한글작문교실 전문강사 양성, 한글작문교실
칠곡군	칠곡늘배움학교(성인문해교육과정), 이동독서글쓰기 과정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7). 평생학습결과표준화시범운영 결과보고서.

## 제2절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 분석<sup>4)</sup>

### 1. 평생학습계좌제의 도입 필요성

평생학습계좌제의 도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 공급기반 확대 및 통합적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센터, 고용지원센터, 교육청,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 지원 전달 체계 간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과 정규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

4) 본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기관 등 평생교육 공급기관에 대한 질 관리 및 인증평가를 통한 통합적 평생교육 공급체계 구축이다.

둘째, 학습비 지원과 학습 이력관리를 통합하는 학습계좌제의 단계별 도입 및 확산의 필요성이 있다.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한 학습비 지원과 학습결과 평가인정체제의 구축 병행과 성인의 인품·능력·가치의 통합적 성장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직무기초능력,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직업·평생교육을 아우르는 평생학습 계좌 체계 구축이다.

셋째, 전 생애단계별 학습결과 평가인정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습결과에 대한 학점 인정 확대로 평생학습계좌제와 대학, 원격대학, 학점은행제간 통합 체계 형성과 민간자격·비형식 학습결과를 포괄한 국가자격체제의 재설계와 연동하여 교육-훈련-자격-학력이 호환이 가능한 학습결과 활용체계 구축이다.

## 2. 평생학습계좌제의 도입 방향 및 내용

### 가. 추진 방향

첫째, 다양한 평생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여 학력·자격인정과 연계를 통한 개인 학습경험의 체계적 관리로 평생 직업경로 설정 및 취업에 활용이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습비 지원으로 초·중등 및 대학졸업 학력 취득 기회를 보장하여 학력격차에 의한 빈곤의 대물림 완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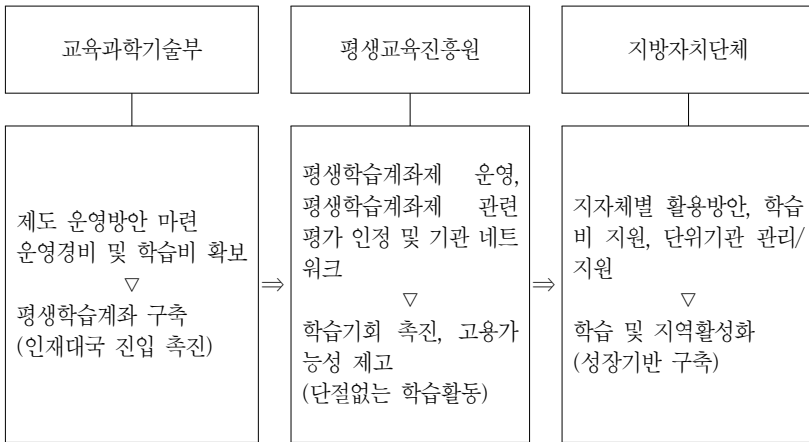
셋째, 학습자의 선택권 강화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가 인정을 통해 평생학습기관 간 선의의 경쟁 및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 유도이다.

넷째, 학습이력관리부문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BH, 노동부 등과 협의 추진)한다. 학습비 지원은 노동부에서 재직근로자, 실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직업기초소양, 민주시민교육 및 학력 취득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한다.

나. 추진체계<sup>5)</sup>

평생학습 계좌제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지방자치단체(시·도), 단위교육기관의 체제효율적인 평생학습계좌제 추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1] 평생학습계좌제 지원 체제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주체들의 역할이 기능은 다음의 <표 III-3>와 같다.

5) 본 추진체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 간의 현재 업무 진행 사항을 정리한 것임. 따라서 본 추진체계가 확정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단 평생교육법상 학습계좌제 운영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14조 5항). 또한, 2008년도 10월 고시한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사업의 실무 작업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표 III-3> 학습계좌제 실행기구의 역할 및 기능

기구명	역할 및 기능
<p>교육과학기술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학습계좌제 시행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정책적 기반의 계획 및 수립</li> <li>-평생학습계좌제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li> <li>-평생학습계좌제 관련 정책, 제도 등 총괄 계획 및 수립</li> <li>-타부처와의 연계·협력</li> <li>-학습계좌제 시행을 위한 시행 세부규칙 마련</li> <li>-평생학습계좌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li> <li>-평생학습계좌제 설명회, 신청공고 및 대상기관 선정</li> <li>-평생학습계좌제 운영기관 경비 지원</li> <li>-평생학습계좌제 시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li> <li>-평생학습결과 관련사업 촉제 및 경진대회 개최</li> </ul>
<p>평생교육진흥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좌제 관련 정책, 제도 등 총괄계획 및 수립</li> <li>-계좌제 관련 정책, 제도 등 총괄 계획 및 수립</li> <li>-평생학습계좌제 관련정보의 종합기록 및 관리</li> <li>-평생학습계좌제 교강사 및 단위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인정 및 자문</li> <li>-평생학습계좌제 사업 홍보자료 및 가이드북 제작 및 보급</li> <li>-중앙단위 평생학습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행</li> <li>-평생학습계좌제 사업신청공고 및 평가인정기관 선정</li> <li>-평생학습계좌제 운영 관련 컨설팅 및 평가</li> <li>-평생학습계좌제 사업관련 벤치마킹(해외사례연구)</li> <li>-평생학습계좌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li> </ul>
<p>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학습계좌제 등록 학습자의 활동 지원</li> <li>-평생학습계좌제 안내 및 정보지원</li> <li>-지역내 기관간 네트워크 파트너십 형성</li> <li>-평생학습결과 활용방안 구축</li> <li>-평가인증위원회 구성지원</li> <li>-평생학습결과 프로그램, 교육기관, 강사 승인</li> <li>-학습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li> <li>-평생학습계좌 사업 프로그램의 홍보</li> <li>-평생학습계좌 사업 전담부서의 설치</li> <li>-평생학습계좌 사업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li> <li>-평생학습계좌 자체 학점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li> </ul>

<표 계속>

기구명	역할 및 기능
평생학습계좌 심의위원회	-학습자의 교육경험 인증 및 자격 심사 -프로그램 평가 및 학습결과 인증 -학습결과 인증 기준 마련 -교·강사 및 교육기관 최종승인
단위교육기관	-학습상담 및 학습자지원 -단위교육기관 관련기관 간 파트너십 구축 -평생학습계좌제 신청 접수 및 관리 -단위교육기관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학습자	-학습계좌 개설 -평생학습과정 이수, 학습비 신청 등

#### 다. 세부 추진내용

##### 1) 학습이력관리

학습이력관리 대상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18세 이상)로서 학습계좌 개설과 학습결과의 누적관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습결과의 누적관리에 따른 개인 학습설계 및 경력설계 지원한다. 평생학습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경력설계를 지원한다.

학습결과의 학력취득과 연계를 위해 평가 인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과(과목 이수, 학점 취득, 자격증 등)를 누적 관리하여 상응하는 학력취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위를 수여한다. 기존 학점은행제를 통한 대학 학력 인정과 비교하여 평생학습계좌제의 학습이력관리는 초·중등학력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을 포함하는 제도로 확대하였다.

학습결과의 자격취득과 연계를 위해 누적된 학습결과를 활용하여 자격 취득 시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등 학습결과 활용방안 검토하고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또한, 누적된 학습결과를 노동시장에서 고용정보로 활용하게

위해 다양한 학습경험을 누적하여 등록하고 취업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또한, 우선 공공기관 취업 시 평생학습 이력서를 기본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 고용정보로서 활용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증진시킨다.

## 2) 평생학습지원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첫째, 학습이력관리 정보인프라 구축과 학습자의 학습설계에 적합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부와 협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을 검토하고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센터, 교육청 등 기관 간 정보공유체제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한다.

둘째, 학습자의 학습이력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 검색, 자신의 교육수료 내역 확인, 온라인 수강신청 등을 통하여 강좌관리, 수강생관리, 강사관리, 출석 및 수료관리, 수료생 관리 및 학습비 교부 및 지출내역 관리한다.

셋째, 교육기관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서 수강신청 강좌의 과목별 실시간 접수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수강신청 후 접수, 수정, 취소, 확인, 출력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학습비 바우처 등)한다.

넷째, 고용지원센터·교육청·평생학습센터 등 평생학습지원기관 간 호환이 가능한 학습이력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3) 평생학습프로그램 평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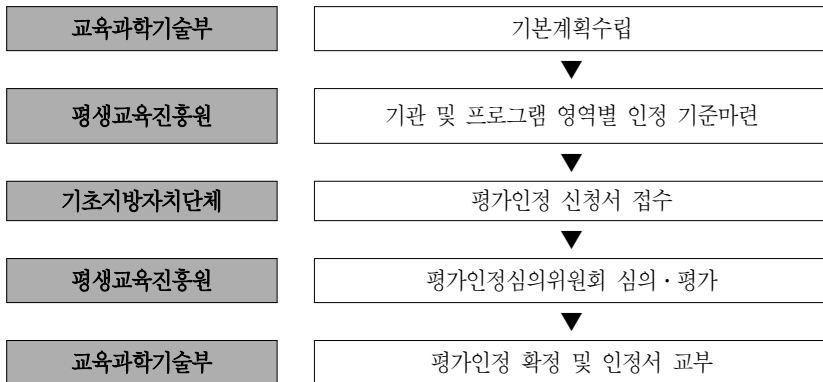
### 가) 추진방향

이력관리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평가인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전에 평가인정과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영역별 평가인정기준을 마련한다. 또

한, 학습결과는 일정 수준으로 나누어 누적·관리하고, 학력·자격 인정 등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한다.

평생학습계좌제로 관리할 프로그램(평가인정 기준(안))은 (기관 및 프로그램) 평생교육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 제7조의 공공시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2조의 시설 및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하며 (교·강사 및 수업시수) 학력인정프로그램은 별도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선정·지원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하며 평가인정체계는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III-2] 평가인정체계



#### 나) 평가인정 내용

학점은행제, 독학학위과정 등과 같이 학습기준이 표준화되고 사전에 평가인정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누적 관리하여 학점 및 자격으로 인정하며 (학력비 인정 프로그램)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등은 학습결과를 누적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경력설계 및 학습비 지원의 근거로 활용한다.

라. 학습비 지원

1) 학습비 지원 대상

학습계좌에 등록된 학습자 중에서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과 예산을 고려하여 학습비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기존에 시행 중인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소외계층평생교육지원 사업 등을 학습비 지원사업과 연계·추진 내역은 <표 III-4>과 같다.

<표 III-4> 학습비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 대상

지원 대상	학습프로그램	등록학습자	지원계획인원	
기초생활수급권자 (1,535천명 '06)  새터민 (85천명 '06)	학점은행제	192천명	13천명(6.8%)	
	독학학위과정	53천명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과정	25천명	6천명(24.0%)	
	성인문해교육과정	5,991천명	42천명(0.7%)	
국제결혼이주자 (88천명 '07)  장애인 (201만명 '07)  노인 (4,365천명 '05)  경력단절여성  등	학 력 비 인 정 ( 능 력 개 발 )	직업능력향상교육 (자격증 취득과정 등)	-	10천명
		인문교양교육	-	5천명
		시민참여교육	-	4천명
		직업훈련프로그램	-	10천명
		기타 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프로그램 (예: 마을평생학습 리더 양성과정 등)	-	10천명
			총 10만명	

자료: 평생교육진흥원(2008).

주: 2012년까지 학습비 지원 대상 10만 명으로 확대.



## 2) 학습비 지원절차

평생학습능력개발카드신청(학습자)→심사 후 평생학습능력개발카드 교부(기초자치단체)→프로그램수강(학습자)→프로그램 실시신고(평가인정기관)→프로그램 수료자 보고(평가인정기관)→학습비를 신청(기초자치단체)→학습비 지급한다. 또한 학습비 지원 방법(안)은 학습자의 학습프로그램 등록 시 30~50%를 선(先)지급하고 학습자가 80% 이상의 출석률로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잔여금을 완급한다.

### 마. 평생학습계좌의 운영방법

#### 1) 평생학습계좌제의 지정

학점은행과정, 독학학위 시험면제과정, 문해교육프로그램 등 기 평가인정 과정과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학력인정 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같은 기 평가 인정과정은 신규지정 절차가 필요 없이 학습계좌제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하다. 평생학습계좌제 운영과정으로 신규지정절차가 필요한 과정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있다.

#### 2) 평생학습계좌 교육프로그램의 지정기준

평생학습계좌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교사자격 등과 동등한 자격조건의 교사 및 강사진을 확보하고, 학교급별 교육기본시설을 갖추고, 학습과정의 내용이 초·중·고·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 3) 시범 사업 운영 분석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지역인재 정책 연구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활성화-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이라는 과제를 공모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2008년 10월 초 평생학습계좌제 시범 사업 운영 공모를 위한 공고를 하였다. 시범 사업내용은 정보 전략 계획 수립 및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5.3억), 상담정보제공 등 학습자 지원체제 구축(1억), 학습프로그램 평가인정체제 구축(0.6억), 지역별 정책대상그룹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3억)으로 총 사업비 9.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본 시범 사업에는 현재 평생학습 도시 중 4~5개를 11월 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전 국민의 평생학습 촉진과 학습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 4) 시범 사업에 대한 소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범사업에서는 학습이력관리 시스템 및 평가인정체제 구축과 지역별 정책대상 그룹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것이다. 본 사업이 2009년 6월까지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기 추진 중인 평생학습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약 5,000명 정도의 학습계좌제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치밀한 계획 수립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충분한 예산확보 문제와 노동부와의 사업 호환성 등에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2009년에는 전국 단위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모든 국민이 평생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 제3절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시범 사업 분석6)

#### 1. 기존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유사한 제도 분석

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실업급여를 통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등 고용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하였다. 기금의 재원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하되, 보험적용 및 징수는 근로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다.

2008년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보험료는 3조 8,092억 원, 여유자금회수 7조 2,490억 원, 재산수입 4,330억 원, 용자금회수 860억 원 등 총 11조 7,118억 원이었고, 이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1조,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1조 8,460억 원을 지출할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 참조).

<표 III-5>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8)

(단위: 백만 원)

수 입		지 출	
계	11,711,874	계	11,711,874
○고 용 보 험 료	3,809,196	○ 고용안정 · 직업	
○가 산 · 연 체 금 등	52,766	능력개발사업	1,846,902
○자 산 수 입	433,014	○ 실 업 급 여	2,562,197
○용 자 금 회 수	86,022	○ 산전후휴가급여 등	209,030
○기 타 잡 수 입	54	○ 고용보험사업운영	107,367
○일 반 회 계 전 입 금	10,218	○ 반 환 금	46,654
○공 자 기 금 이 자 수 입	21,547	○ 공 자 기 금 예탁	50,000
○공 자 기 금 예탁원금회수	50,000	○ 여 유 자 금 운 용	6,889,724
○여 유 자 금 회 수	7,249,057		

자료: 노동부(2008), p.47.

주: '06년도부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계정 통합.

6) 본 내용은 노동부(2008)의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

직업능력 개발(고용안정) 사업에서 근로자 수강지원금, 직업능력개발카드제, 전직 실업자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등의 교육훈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노동부는 기금으로 사업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국고를 조성하여 신규 직업자 직업훈련,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새터민 직업훈련, 영세자영업자 능력개발 지원 사업, 지역실업자 직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표 III-6> 참조).

<표 III-6> 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학습비 지원 학습계좌제 유관사업

구분	대상 (인원수)	지원 예산	지원기준	내용	비고
직업 능력 개발 카드 제	29,000명	14,800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 자</li> <li>· 단시간근로자</li> <li>· 파견근로자</li> <li>· 일용근로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1인당 각각 보험연도 내 100만한도</li> <li>· 총 지원 금액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수혜대상 단계적 확대 예정, 08년 9월 실업자 일부 시범실시 후 청소년 계대군인('09년), 중소기업</li> </ul>
근로자 수강 지원금	258,760 명	56,150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 중, 훈련수료 후 1월 이내 이직자, 40세 이상 자, 상시 사용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 고용자,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소정 출석일수의 80%이상 출석 수료한 경우 일반과정은 수강료의 80%, 정보화기초 혹은 인터넷원격훈련은 수강료 전액, 외국어과정은 수강료의 50%를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10), 비정규직('11년) 등으로 확대하여 '11년에 전면 실시 계획</li> </ul>

<표 계속>

구분	대상 (인원수)	지원 예산	지원기준	내용	비고
전직실업 자훈련	68,000명	173,301 백만원	· 고용보험적용 사업장 실직 근로자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	· 훈련비 무료,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 부담 · 월 5만원 교통비 지원(1일 4시간, 1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 식비 6만원 (1일 5시간 이상, 월 평균 100시간 이상 과정 수강자)	· 매년 「지역·산업별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결과 바탕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방청별 훈련계획 수립 신규 훈련과정개발 등 실업자훈련의 지역성·자율성 강화
우선선정 직종훈련 (노동부 민간훈련 기관 위탁)	12,200명	88,973 백만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자 중 상급학교 비진학자	· 훈련비 무료 · 매월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 (1일 5시간 이상 훈련 수강자) · 매월 훈련수당 20만원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훈련기간 중 출석일수 80% 이상인자, 고3 재학생의 경우 10만원 지원) ※ 2회차 수강자는 훈련수당 50% 지급받고, 3회차 수강자는 훈련수당 지급 받을 수 없음	· 청소년 실업자의 훈련전문기관을 육성 하여 산업 수요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양성·공급하여 인력부족으로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업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
우선선정 직종훈련 (노동부 대한상의 위탁)	3,200명	30,669 백만원			

자료: 박인중(2008). 재인용.

주: 대상 인원수와 지원예산은 2008년도 계획안임.

또한, 노동부의 국고에 의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표 III-7> 참조).

<표 III-7> 노동부 국고에 의한 훈련비 지원사업

구분	대상	지원예산	지원기준	내용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17,000명	43,553백만원	· 대졸 미취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실 업자	· 훈련비 월 362천원 · 훈련수당 월 209천원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900명	1,174백만원	· 여성 가장 미취업자	· 훈련비 월 362천원 · 훈련수당 월 110천원
새터민 직업훈련	1,100명	3,352백만원	· 새터민	· 훈련비 월 300천원, 690천원 · 훈련수당 월 270천원, 100 천원
영세자영업자 능력개발지원	2,500명	2,836백만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사업 자(면제사업자로 연간 매출액 4,800 만원 미만 사업자 로서 구직 등록 하 고 훈련 희망자 · 신용회복위원회 에 신용회복 지원 확정 받은 사업자	· 훈련비 월 362천원 · 교통비 : 월 5만원 ·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 상이고, 월평균훈련시간이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로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 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식비 : 월 6만원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 상이고, 월평균 훈련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을 수강한 경우로 단위기 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 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5,451명	7,005백만원	· 비진학청소년, 모 자보호대상자	· 훈련비 월 362천원 · 훈련수당 월 110천원

<표 계속>

구분	대상	지원예산	지원기준	내용
자활훈련	1,451명	2,83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직업훈련 가능한자</li> <li>· 구직등록 및 직업적용 훈련 이수자 중 훈련의지, 적성 등을 고려 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비 무료</li> <li>· 훈련수당 : 월 7~44만원 지원</li> <li>· 교통비 : 단위기간 실제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지급 (중도탈락 경우는 일할계산)</li> <li>· 식비 : 1일 5시간 이상 월 평균 100시간 이상의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 실제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지급 (중도 탈락한 경우 일할계산/기숙사 이용훈련생 제외)</li> <li>· 자활수당 : 1일 4시간 이상 1월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li> <li>· 우선선정직종수당 : 1일 4시간 이상 1월 80시간 이상과정으로서 우선 선정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li> </ul>
자활훈련	1,451명	2,84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직업훈련 가능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비 무료</li> <li>· 훈련수당 : 월44만원 지원</li> <li>· 교통비 : 단위기간 실제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지급 (중도탈락 경우는 일할계산)</li> <li>· 식비 : 1일 5시간 이상 월 평균 100시간 이상의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 실제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지급 (중도 탈락한 경우 일할계산/기숙사 이용훈련생 제외)</li> </ul>

&lt;표 계속&gt;

구분	대상	지원예산	지원기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수당 : 1일 4시간 이상 1월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li> <li>· 우선선정직종수당 : 1일 4시간 이상 1월 80시간 이상과정으로서 우선 선정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li> </ul>

자료: 박인종(2008). 재인용.

##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분석

### 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념 및 추진배경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근로자(구직자 포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훈련서비스 전달체계이다.

그 동안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07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시, 실업자훈련에도 바우처제 도입 논의를 거쳤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평생학습계좌제” 및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의 주요 내용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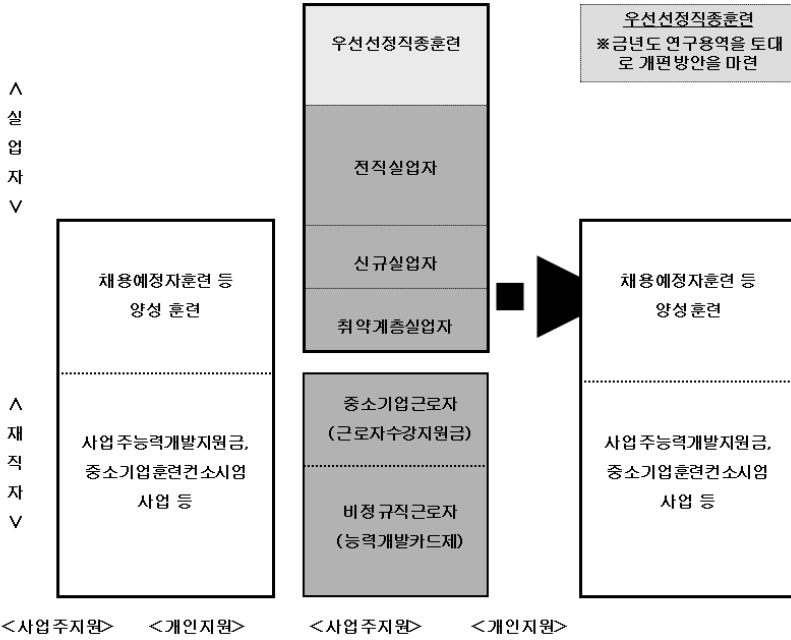


## 2) 추진 방향

훈련생은 훈련기관 지원에서 훈련생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자기주도적 훈련선택권을 확대, 훈련기관은 훈련시장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완화하고 훈련과정의 다양화 및 경쟁을 통한 훈련의 질을 제고한다. 정부는 상담, 정보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고 훈련성과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훈련시장은 시장가격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훈련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기업의 훈련수요를 정부가 승인하는 범위내로 제약함에 따라 실제 수요와 공급간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업자훈련의 개인 지원방식은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인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로 전환하고, 재직자훈련의 개인지원방식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와 수강지원금제도는 비용지급방식 변경, 훈련과정심사의 전문기관 위탁, 이력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점진적으로 계좌제로 통합관리 한다. 실업자 및 재직자훈련의 사업주 지원방식은 산업 또는 업종별 단체 등이 중소기업의 숙련수요를 결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별도 추진).

[그림 Ⅲ-3] 체제개선 전·후 비교



<표 Ⅲ-8>은 현행 실업자직업훈련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표 Ⅲ-8>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 대상이 훈련 기관에서 훈련생으로 바뀐 점이다. 또한, 획일적인 훈련 기간에서 다양한 훈련 기간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과 훈련비의 경우 정부가 정한 훈련비 단가 적용에서 벗어나 훈련 기관이 시장 가격에 따라 훈련비를 책정한다는 점이다.

&lt;표 III-8&gt; 현행 실업자직업훈련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비교

구 분	현행 실업자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대상	○훈련기관	○훈련생
지원수준	○훈련가능횟수 3회	○200만원 한도 내 횟수 제한 없이 훈련가능
훈련기간	○6개월 또는 1년 등 획일적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단일과정으로 편성→수준별 학습 곤란 ※ 예 : 웹디자인과정이 기초~심화까지 단일과정으로 편성	○다양한 훈련기간 -본인에게 적합한 단기과정들을 조합하여 수강→개인 맞춤형 훈련과정 설계 가능 ※ 예 : 웹디자인과정은 ①IT기초, ②포토샵, ③웹디자인 심화과정으로 세분화 가능 -사전 학습경험, 직장경력 등이 있는 경우 바로 심화과정 수강 가능
훈련비	○정부가 책정한 훈련비단가 적용 -훈련기간 장기화, 부실훈련 등 부작용	○훈련기관이 시장가격에 따라 책정
상담 등 지원	○고용지원센터에서 훈련상담 서비스 미흡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 발급 상담 강화(필수사항) -상담을 거쳐 계좌발급 여부를 판단하고, 훈련 수강분야를 협의 결정
훈련정보 제공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 ○훈련생 평가기능 없음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과정 수강 후 훈련생 평가 의무화
훈련과정 승인	○지방노동관서별로 분산 승인 -현장전문가 참여 미흡	○중앙 집중형으로 심사·승인 -분야별 현장전문가가 심사
고용지원센터 역할	○훈련기관 관리에 초점	○훈련생 지원에 초점

### 3) 적용범위 및 대상

구직자 및 취약근로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업자 일부에 대해 시범적용 후 단계적 확대한다. 시범사업은 전직·신

규실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이후에는 능력개발카드제·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를 단계적으로 계좌제로 통합 운영한다(<표 III-9> 참조). 시범실시 결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적용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한다.

계좌 발급대상은 상담을 통해 직업(취업)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근로자 중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선택권 확대에 인한 훈련수요의 대폭 증가와 불요불급한 훈련참여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범사업 과정에서 훈련수요 추이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 시에는 장기구직자 등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III-9> 단계적 적용범위 확대(안)

1단계('08하~'09)	2단계('10)	3단계('11)
일부 전직·신규실업자 시범실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통합)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자수강지원금제 통합)

#### 4) 지원 내용

1인당 적정 지원한도액은 현행 실업자훈련 평균 훈련비 200만원 및 평균 훈련기간, 자비부담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00만원으로 설정한다. 계좌발급 횟수는 취업 전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한도를 모두 사용하고도 일정기간(예: 6개월 이상) 이후까지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계좌를 재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취업 이후 일정기간(예: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가 다시 실직하는 경우 재발급한다.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등으로 적용 확대 시 현행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수강지원금 지원수준을 감안하여 적정 지원 금액 설정한다. 현재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수강지원금은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지만 유

효 기간 중 훈련이 개시되었으나 종료시점이 유효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훈련 종료시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훈련도중 취업 또는 수강 포기 시 중도탈락 시점까지 일할 계산하여 훈련비 및 교통비·식비를 지급한다.

훈련비의 20%를 훈련생이 자부담토록 하여 훈련생의 책무성 및 훈련몰입도를 제고한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정 자부담율을 결정하되, 취약 계층은 면제, 훈련 편중 직종은 부담률 상향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일부 경쟁력 있는 기관은 자부담 과정이 있다. 예를 들면 ○○기관의 정보통신 과정은 5개월 훈련비 520만원 중 정부지원 250만원, 본인부담 270만원이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지원기준으로 훈련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훈련비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훈련비 과다인상 또는 지나친 가격인하 경쟁 억제방안(ETPL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훈련비 신청 기관 제외 등)을 마련한다. 교통비·식비 지급은 현행과 같이 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교통비·식비를 지급한다.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출석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현행 제도에서 교통비는 일 4시간 이상 훈련과정의 단위기간(1월)동안 80% 이상 출석 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식비는 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의 단위기간(1월)동안 80% 이상 출석 시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5) 지원 절차

상담 및 훈련정보 제공은 직업(취업)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담은 구직등록 또는 IAP 수립시, 일정형식의 체크리스트(재직/구직기간, 희망훈련-산업수요간 매칭정도, 훈련경험 등)를 활용하여 훈련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차 상담 결과, 훈련필요성이 낮거나 희망 훈련 직종을 정하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상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절차(이의신청→심의위원회→재결정)를 통해 처리한다. 표준화된 개인별 훈련계획서(ITP, Individual Training Plan)를 통해 훈련분야, 훈련생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확정하

고 훈련분야 변경 시 재상담을 통해 계좌를 갱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훈련정보 제공은 HRD-net을 사용자(user) 중심으로 개편하고 훈련과정의 내용, 시설·장비·교사 수준, 취업률(연령별·기업규모별 등), 훈련생 만족도 결과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훈련과정별 수강평가 및 훈련생 만족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취업희망분야의 근무환경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HRD-net 등에 탑재한다. 또한, 훈련이수자 실태조사, 직업전망 자료 등을 통해 직종별 취업률, 임금수준, 직장 정착률(근속률), 관련업종의 직업전망 등 정보를 제공한다. 직종별 현장전문가를 선정하여 해당 업계의 전망 및 취업 후 경로, 평균 임금수준, 필수 훈련코스(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 HRD-net 등에 게재한다.

전산망 구축은 향후 적용범위 확대방향을 감안하여 HRD-net을 사용자(user)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설계·보완한다. 사용자 요구 파악 및 기획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외부전문 기관이 담당하고, 전산망 개발은 한국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적합 훈련과정 목록 제공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합한 훈련과정을 인정하고 목록화(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하여 제공하고 훈련생은 적합성 훈련 프로그램 목록(ETPL)내에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한다. 적합 훈련과정 목록(ETPL) 제공을 위한 심사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훈련기관 단위가 아닌, 훈련과정 단위로 심사한다. 훈련기관이 신청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시설·장비, 교·강사 등 형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훈련과정 내용의 적절성, 훈련장비·교사수준과의 일치도, 구직자·근로자 등 대상별 훈련목적의 적합성, 산업현장의 기술수요 반영 정도, 훈련수준·기간의 적절성 등의 내용을 심사한다. 과정수준은 전체적인 난이도를 고려하여 등급으로 구분하고 과정참여요건(예시: 선행학습 요건, 관련 자격증 소지필요 여부 등)을 공개하여 훈련선택 및 수시 모니터링의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적합성 훈련 프로그램 목록(ETPL) 관리를 위해서 취업률(정부지원과정을 포함한 모든 훈련생) 등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훈련과정은 적합성 훈련

프로그램 목록(ETPL)에서 제외시킨다.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과정만 제외하고, 취업률 등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해당 훈련과정이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인력수요에 비해 훈련이 과잉 공급되는 직종은 적합성 훈련 프로그램 목록(ETPL) 심사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자비 부담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적합성 훈련 프로그램 목록(ETPL) 심사 주체 및 주기는 업종별 사업주단체 등 현장전문가 중심의 직종분과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고용지원센터의 훈련과정 승인(인정) 업무 감소를 기대한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업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내실 있는 심사 및 연간 단위 성과관리를 위해 연 1회 정기심사를 원칙(유효기간 1년)으로 하고, 계좌발급자가 적합성 훈련 프로그램 목록(ETPL) 미등록 훈련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거쳐 해당과정을 “가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심사결과에 대한 검증은 지방노동관서(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의 현장실사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다.

계좌발급은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한 계좌를 발급한다. 카드 자체의 대금결제기능을 부여하여 편의성 및 자기비용 인식 제고를 통한 신중한 훈련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 금융권의 신용카드 프로세스를 활용한 훈련비용을 산정·지급함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의 훈련비용 정산업무를 감소시킨다. 보건복지가족부는 '07년부터 노인돌봄미사업,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에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에 있다.

훈련비 결제·정산은 금융기관을 통해 비용을 정산하는 프로세스로 개편하고 훈련비 결제·정산 절차는 훈련생 자부담분 및 정부지원분 절차가 다르다. 훈련생 자비부담분은 자비부담분 결제(훈련생)→자비부담분 대금청구(훈련기관)→대금지급(금융기관)→훈련생에 자비부담분 대금청구(금융기관)→납부(훈련생) 절차를 거치며, 정부지원분은 훈련비용 정산시스템에 따라 금융기관이 훈련기관별 훈련비 정산내역을 송부하면 정부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집행하고 금융기관이 훈련기관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금융기관에 자비

부담분을 제외한 훈련비 청구(훈련기관)→정부에 정산내역 송부·자금집행 요청(금융기관)→금융기관에 자금집행(노동부)→훈련기관에 대금을 지급하며(금융기관)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식비도 금융기관이 지급한다.

훈련이력 관리는 HRD-net을 개편·보완하여 개인별 훈련이력을 통합 관리·지원한다. HRD-net을 개편·보완하여 개인별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실업자훈련과 재직자훈련 이력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계좌신청, 계좌한도관리, 수강내역, 취득자격정보 등을 제공·추진한다.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훈련이력관리가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사업 내 자격제도 등을 확장, 업종별 단체 등에서 통용되는 직업능력인증제도를 마련토록 지원하고, 인증제도와 훈련이력의 연계를 도모한다.



#### 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활용의 기대효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활용으로 인한 훈련생, 훈련기관 및 정부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생은 훈련시장의 서비스구매자인 훈련생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훈련선택권 확대 및 만족도를 제고해준다. 또한, 훈련 상담,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여 훈련생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게 된다. 둘째, 훈련기관은 정부지원훈련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완화하여 훈련시장의 확대 및 경쟁을 강화한다. 또한, 정해진 물량에 따라 훈련을 실시할 필요 없이 경쟁력 있는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훈련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정부는 훈련비 일부 자부담, 지원한도 제한 등을 통해 꼭 필요한 훈련을 선별하여 참여토록 유도하고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활용한 훈련비용 지급 프로세스를 통해 지방관서의 훈련비 신청·지급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전과 후의 지원체제, 공급기관, 훈련프로그램, 수요자 지원, 지원방식 및 지원수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III-10> 참조).



&lt;표 III-10&gt;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편
지원체계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공급기관	한정된 공급기관	다수의 공급기관
훈련 프로그램	표준화된 훈련과정 ※ 6개월, 1년 단위로 획일화	다양한 훈련과정 ※ 훈련기간의 다양화로 필요훈련 조합
수요자 지원	훈련상담, 정보제공 미흡	훈련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지원방식	참여횟수 제한방식	지원금액 한도 설정방식 ※ 일정비율 본인부담을 통해 책무성 강화
지원수준	표준 훈련비단가 기준	(훈련서비스) 시장가격 기준

###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계획(안)

#### 가. 시범 사업의 필요성 및 시범 지역 선정

현행 공급자중심의 실업자훈련 체계를 수요자중심의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개편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기존·신규 훈련기관, 훈련생 등의 적응 및 전산 등 시스템 안정화기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08년 일부지역 시험운영을 거쳐 '09년 현행 물량배정방식과 병행하여 전국단위로 시범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표 III-11> 참조).

&lt;표 III-11&gt; 단계별 시범사업계획(안)

구분	1단계('08.9~12)	2단계('09년중)
적용범위	전직+신규실업자	전직+신규실업자
실시지역	대구·광주지역	전 국
비 고	계좌발급시스템, ETPL 등 시험운영, 상담 프로세스 작동여부, 전직/신규 특성 파악 등	훈련수요·공급 등 제도 전반적인 분석 등

1단계 시기인 '08년 9월부터 '08년 12월까지 시범운영지역은 대구광역시(경산시 포함)와 광주광역시이다. 이 시범지역에는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문제점 파악 및 즉각적인 조치 등 사업지원을 위해 시범운영지역 내 센터에 모니터링·전산·홍보요원을 지원한다. 사업홍보는 일괄대행사를 선정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홍보 예산의 일부는 시범운영지역에서 직접 자체 실정에 맞게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08년 실업자훈련 예산 외 추가적인 사업관련 예산 지원(가용예산 200억) 및 '09년도 실업자훈련(기존 물량배정방식) 예산 배정 시 우대 지원한다.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 나. 시범 사업의 법적 근거, 홍보 및 교육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는 「(가칭)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시범실시규정」(노동부 예규)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향후 법령을 개정('09.상반기)한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및 지방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종합상담센터, 카드사 내 상담자를 배치하여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Q&A(문답집), 홍보용 동영상·팜플렛 등을 제작·배포하고 카드명칭 공모 등을 통해 홍보효과를 최대화하며 전문 대행기관과 일괄계약을 체결(Turn-key)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연구용역(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위탁)을 발주하여 시범사업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보완 방안 등을 마련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09년 중 제도개선과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2008년 소요예산은 전직·신규 실업자훈련 예산 절감분 204억 원을 활용(기금 102억 원, 일반회계 102억 원)하고 2009년에는 전직·신규실업자훈련 예산 중 634억 원을 활용(기금 476억 원, 일반회계 158억 원)한다.

#### 다. 시범사업 운영의 추진체계 및 시범 사업 일정

시범사업 운영의 구체적인 추진체계 및 시범 사업 일정은 다음과 같다<표 III-12> 참조).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팀을 구성(3.31)하여 사업계획 수립, 법령·시행지침 제·개정 등 사업 총괄 관리를 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은 HRD-net 개편을 통한 정보제공·이력관리 강화, 금융기관과 연계한 훈련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한카드사의 경우 훈련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및 HRD-net과 연계를 하고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적합 훈련과정(ETPL) 심사를 위한 직종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좌제 관련 연구·자문 등 정책수립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향후 확대방안 연구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 &lt;표 III-12&gt; 추진체계

주 체	주 요 기 능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팀을 구성(3.31)하여 사업계획 수립, 법령·시행지침 제·개정 등 사업 총괄 관리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개편을 통한 정보제공·이력관리 강화, 금융기관과 연계한 훈련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지원 등
신한카드사	훈련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및 HRD-net과 연계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적합 훈련과정(ETPL) 심사를 위한 직종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좌제 관련 연구·자문 등 정책수립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향후 확대방안 연구 등

<표 III-13>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사업 추진과제 및 추진 일정을 설명한 것이다.



####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대한 소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사업시범기간(~'09년) 동안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0년 이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통합)로 하고 3단계('11년)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즉,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기존의 훈련체계가 유사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단계적으로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3단계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대략 48,960억 원(중소기업 근로자 306만명, 2005년 기준)이 소요되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와는 달리 노동부는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sup>7)</sup>

### 제4절 학습계좌제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비교 분석

평생학습계좌제는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습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평생학습을 누적 관리하여, 학력 및 자격 인정과 연계하고 평생 직업경로 설정 및 취업에 활용함이다. 이를 위해서 직업기초소양, 민주시민교육 및 학력 취득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이력관리 대상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18세 이상)로서 학습계좌 개설과 학습결과의 누적관리를 희망하는 자이다.

기존 학습계좌제의 학습이력관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 학력 인정에 제한하여 운영하였다. 향후 평생학습계좌제에서는 학력 인정범위를 초·중등학교까지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을 포함하는 제도로서

7) 중소기업 근로자 306만 명에게 160만원을 지급하였을 경우의 추정 예산임.

확대 계획할 필요가 있다. 평가 인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과(과목 이수, 학점 취득, 자격증 등)를 누적 관리하여 상응하는 학력취득 요건에 충족할 경우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결과의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자격, 비형식 학습결과를 포괄한 국가자격체계의 재설계와 연동하여 교육·훈련·자격·학력이 호환 가능한 학습결과 활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누적된 학습결과를 노동시장에서 고용정보 활용으로 평생학습 과정 및 운영 기관에 대한 평가인 증체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지원센터·교육청·평생학습센터 등 평생 학습지원 기관 간 호환이 가능한 학습이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평생 학습지원 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운영 방향(안)은 다음과 같다. 도입 배경은 훈련기관 또는 사업자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훈련 수요자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바우처)으로 전환하여 선택권과 자기주도적 훈련 촉진이다. 정책목표로써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로 개편 및 취약계층(실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에게도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기회 제공이다. 지원대상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한 자 중 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해 지원이다. '08.9월 실업자 일부 대상 시범실시 후 '09년 이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제대군인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수준은 계좌당 일정한도(예시: 200만원) 내에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여 훈련생의 신중한 훈련선택 유도 및 훈련몰입을 제고한다. 지원 절차는 고용지원센터 구직등록 후 상담을 거쳐 계좌발급(고용지원센터)→ 훈련 선택 및 참여(훈련생)→ 훈련비 청구(훈련기관)→ 훈련비 지급 및 결제내역 송부(금융기관)→ 예산집행(정부) 과정을 거친다. 학습이력 관리는 HRD-net 개편을 통해 현행 재직근로자 중심에서 실업자 등으로 확대·개편하여 훈련 참여자별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08.5월부터 HRD-net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 과정과 훈련과정 형태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원과정 확대는 직무과정 중심에서 관련 과정, 직무기초능력, 창업 및 직무 관련 교양과정 등으로의 확대이다. 훈련 형태 확대는 집체 방식 외에 e-Learning, Blended Learning과

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학습결과 평가인정체제 구축 방향으로는 산업별·업종별 협의체(Sector Council)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 훈련결과 인증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중심으로 학습결과가 학점-학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평생학습계좌제의 틀 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결과를 학점, 학력·자격 등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술자격체계 등의 규정 고려가 필요하다. <표 III-14>은 학습계좌제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비교·설명한 것이다.

<표 III-14> 학습계좌제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비교

구 분	학습계좌제(안) (교육과학기술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안) (노동부)
목 적	○ 평생학습이력관리 및 학력취득 지원 (평생교육법제23조)	○ 근로자, 구직자 등의 자기 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 및 이력관리 지원(고용보험법제29조)
대 상	○ 학습이력관리 대상은 평생학습 계좌 등록을 원하는 평생학습자 ○ 학습비지원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수준과 예산규모를 고려	○ 이력관리 지원대상은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과정에 참여하는 구직자, 재직근로자 ○ 훈련비 지원은 구직자, 재직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등 포함)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 ※ '08년 실업자일부 시범실시 후 '09년부터 단계적 확대
내 용	○ 대상자 학습이력관리 ○ 학습비 지원 : 1인당 연간 80만원 (안)	○ 훈련이력 관리 ○ 훈련비 지원 - 구직자 : 1인당 연간 200만 원(안)
지급방법	○ 평생학습카드 또는 바우처 발급	○ 직업능력개발계좌 카드 발급

<표 계속>



구 분	학습계좌제(안) (교육과학기술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안) (노동부)
학습기관	○ 평가인정받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적격 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결과활용	○ 이력관리 (학력취득, 고용정보 활용 등)	○ 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및 이력관리결과의 취업자료 활용
예산·지원 인원	○ '08년 예산 없음 ○ '09년 중기재정계획상 26억원 반영 (학습이력관리 : 10천명 학습비 지원 : 2천명)	○ '08년 시범실시 : 200억 원 내외 (기존 실업자훈련예산 활용) - 지원인원 : 20천명 ○ '09년 중기재정계획상 35천명 반영
추진체제	○ 교육과학기술부 : 기본정책수립 ○ 평생교육진흥원 : 정책집행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정책집행 협조 ○ 지방자치단체 : 카드발급	○ 노동부 : 기본정책수립 ○ 고용지원센터 : 상담 및 계좌발급 ○ 금융기관 : 계좌카드 발급
연계방안	○ 학습이력 종합정보시스템(교육과 과학기술부)과 직업능력개발 종합전산 망(노동부)과 연계	○ 좌동

자료: 교육과학기술부노동부(2008), 내부자료.

평생학습계좌제는 학습계좌제(교육과학기술부)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노동부)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국정과제상 평생학습계좌제, 통합형 계좌제,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를 혼용되고 있으나,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평생학습계좌제”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평생학습계좌제의 단계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표 III-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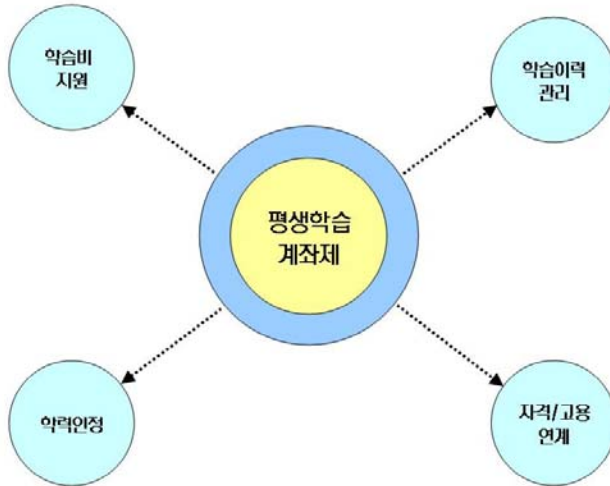
&lt;표 III-15&gt; 평생학습계좌제 단계별 도입방안

구분	중 점 추진 내용	학습계좌제 지원 대상	학습비 지원 및 이력관리 평생학습영역	비고
1 단 계	제도확산·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 실시	저학력 성인, 고용보험 가입 실업자일부	성인기초·문해교육 직무소양교육·직업 능력 개발훈련 등	'08년 하반기
2 단 계	직업교육-훈련 등 평생학습 영역 간 연계 활성화, 재원 마련 및 통합 실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 위계층 일부,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청소 년·제대군인 등	인문교양·문화예 술·시민참여교육, 직 무소양교육·직업능 력 개발훈련 등	'09년~
3 단 계	전 국민의 평생학습 생활화를 위한 지원 대상 확대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노인 등 일반 국민	평생학습 전 영역	'11년~

출처: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는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해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평생교육법제23조)이며, 노동부의 직업능력계좌제는 근로자(구직자 포함)가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훈련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 사업 영역 내부의 체계적인 완결성 및 영역 간 유기적 연결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습비 지원, 학습이력 관리, 학력인정 및 자격·고용연계와 같은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그림 III-4] 참조).

[그림 III-4] 평생 학습계좌제 운영도



첫째, 학습이력 관리는 다양한 학습경험과 학습결과를 누적 관리한다. 학교 밖의 학습결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비형식·무형식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인정, 누적 기록, 관리를 목표로 한다. 학습결과에 대한 노동시장 활용도 및 사회적 통용성을 제고한다. 단순 누가기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지수(LQ)로 환산하여 학점, 포인트, 점수로 환원(투자시간 등)하여 기록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학습설계 및 경력설계를 지원한다(<표 III-16> 참조).

<표 III-16> 교육과학기술부·노동부 학습이력관리 시스템 요약

구분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학점은행제	독학사제도	근로자능력 개발 카드제	근로자 수강 지원금	실업자 훈련
이력관리 정보 정보시스템	학점은행제 학사종합정보 시스템	독학학위검정 센터 포탈	HRD-Net	HRD-Net	HRD-Net
대상 및 지원금 (’08)	293천명	64천명	30천명 (148억 원) ※고용보험기금	259천명 (562억 원) ※고용보험 기금	67천명 (1,733억 원) ※고용보험 기금 일반회계
이력관리 주요내용	-기본인적사항 -학점원별 학 점 취득사항	-기본인적사항 -개인학적정 보(취득한 과목 이력, 시험 결과 등)	-개인 수강 내 역(교육훈련 종류, 기관, 과정, 기간, 결과 등) -훈련비 지원 내역, 잔액	좌동	금년도 구축 예정
기타	-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대 상, 자격 학 점인정 -상담 등	-학습정보 -학사정보 -시험정보 -상담 등	-훈련기관·과 정 검색 및 상담 -훈련기관평가 정보 제공	좌동	좌동

자료: 교육과학기술부·노동부(2008), 내부자료.

둘째, 수요자의 평생학습 선택권 강화를 위해 학습비를 지원한다. 평생학습 참여 및 능력개발 기회보장, 교육안정망 구축, 학점은행제, 고교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등 학습자 중 취약계층과 성인문해 교육과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저소득, 저학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노인, 새터민, 이주여성 등)에 우선 지원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만 평생학습 확대를 위한 전략관련 평생학습 결과 표준화 평가인정프로그램(마을리더 등)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제와 연계하여, 근로계약 1년 이하,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2만9천명 148억 원('08), 카드제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학습비를 지원한다. 학습비 지원액은 18세 이상 성인학습자에 연간 80만원으로 한다.

셋째, 학습기관을 평가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인증을 실시한다. 성인문해교육의 경우 학습비지원과 연동해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개발하고 학력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이수 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성인문해교육 중 중학교 학력인정방안을 수립하고 인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중학교 학력인정시설은 시도교육청에서 전액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교학력인정시설 및 방송고는 연계하되, 일부 취약계층은 학습비를 지원하고, 별도로 고교 학력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하는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학학력 인증의 경우에는 기존 학점은행제와 독학사 제도와 연계하여 시행한다. 이러한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하여 평생교육 학력인정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자격과 고용과 연계된 교육을 실시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평생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과정 이수, 학점은행제에 의해 평가인정 받은 평생교육사 취득용 학습과목 일정학점 이수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자격으로 평생교육사 자격 수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향후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공인민간자격 등 필기시험과목 계좌제로 운영하고 이수 후에는 필기시험 면제를 추진한다(부처 간 협의 필요).

이와 관련하여 평생학습계좌제와 자격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자격체계의 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결과를 통합적으로 인정하는 틀을 구축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축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 경로 다양화를 통해 무형식·비형식 학습 결과의 평가·인정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자격체계(KQF)에 기반을 두고 학습이력을 관리, 인정할 경우 자발적인 학습과 개인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훈련·자격제도를 연계함으로써 통합적인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동 제도의 종합적 질 관리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평생학습계좌제와 자격과의 연계 방향은 다음과 같다.<sup>8)</sup> 학습계좌제와 자격

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기술자격에서 요구하는 응시요건에 현장 경력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계좌제에 의한 교육훈련의 수준이 국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학력 조건에 상응하도록 평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의 학력수준은 기술사는 석사 이상, 기사와 기능장은 학사, 산업기사는 전문학사, 기능사는 고졸 정도의 수준이다.

셋째, 학습자의 학습내용에 따라 어떠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나 각 자격 종목별로 자격 취득요건에서 학습경험만으로도 무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격 제도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등 다양한 유형의 자격이 운영되고 있다.

넷째, 학습결과를 자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 자격의 수준을 어느 학력 수준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자격체계를 통해 수준을 비교할 수 있으나 각 자격의 응시자격, 시험수준, 자격취득자의 활동상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의 자격은 국가자격체계에 따라 수준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훈련과정의 개설시 어떠한 자격과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과정의 개발단계에서 자격과의 연계를 검토하여야 하며, 연계 제시한 자격과 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인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의 전제조건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 및 근로경험의 평가 인정체계 및 다양한 검정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평가주체, 평가방법, 평가대상, 평가절차에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학습 및 경험 중에 평가인적이 가능한 학습과 경험의 범위는 국가직무능력표준(KSS)과 매칭이 가능한 학습 및 경험 내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평생학습계좌제와 자격의 연계방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학점은행제에서 자격 부여 시 학점인정을 해야 한다. 향후 평생

8) 본 내용은 이동임(2008)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학습계좌제에서 학점은행제를 포괄하여야 하므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부여받을 경우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계좌제의 학점 이수결과를 근거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학습계좌제를 통해 일정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 계좌제에 기록된 이수 결과를 근거로 자격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사회복지사와 같이 교육과정 이수로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셋째, 계좌에 기록된 근로경험 및 관련 선행학습 이력을 자격 취득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학습계좌에 기록된 일의 경험과 경력, 관련학습 이력들이 일정 자격 취득에서 요구하는 선행 요건이 될 경우 자격취득으로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국가직무능력표준(KSS) 개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결과를 관련 분야 자격 취득으로 연계가 필요하다. 2008년부터 각 부처별로 중점 추진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KSS) 개발과 관련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KSS)으로 개발된 분야의 경우 평가 인정된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했을 때 그 결과를 계좌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와 같이 계좌제에 기록된 이력이 자격취득에 필요한 유닛을 모두 이수한 경우 관련분야의 자격을 발급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 자격과 평생학습계좌제의 연계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을 두고 평가·인정된 과정의 학습 결과에 대해 투명성과 형평성을 획득할 수 있다.

둘째, 국가자격체제와 평생학습결과의 통합적 관리에 의한 “효율성” 추구이다.

셋째, 다양한 국민을 대상으로 형식적, 비형식적 선행학습경험을 포함하여 인정 시 국가자격체제에 근거한 수준을 명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경로 설정 및 학습촉진에 의한 “개방성” 추구이다.

넷째, 국가자격체제와 연계 시 학습계좌이력은 개개인의 고용 및 직업능력 개발 경로 설계 등에 직업능력 역량을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로 활용이다. 국정과제상 “평생학습계좌제”와 “학습결과 평가인정체제”를 구분하고 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학습비 지원+학습결과 누적관리」의 개념이며, 학점·학력 인정 등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인정은 별개의 제도이다. 학습결과 평가인정체제는 현행 학점인정제도의 활용·확장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 인정된 학습과정 이수 시 학점인정→학력 등 인정으로 연계된다.





## 제 4 장 외국의 사례분석

### 제1절 유럽의 계좌제 관련 제도 분석<sup>9)</sup>

#### 1. 영국의 개인학습계좌(ILA: Individual Learning Accounts)

개인학습계좌에 가입한 학습자는 계좌번호와 계좌카드를 발급 받아 인증 받은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그 학습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25파운드를 예치하고, 정부로부터 150파운드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을 시작한 첫해에는 1백만 구좌에 150파운드를 지급하였고, 그 후에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최대 200파운드까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 정부는 개인학습계좌 운영을 CAPITA<sup>10)</sup>(Capita is the UK's leading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company)라는 민간기구가 전담하게 하였는데, 계좌발급을 희망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육훈련기관도 이 기구를 통하여 신청, 등록하고, 그에 따른 재정청구를 하게 된다. 즉, CAPITA는 개인 신청서를 검토하여 계좌 번호와 카드를 발급하고, 등록되어 있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여부를 확인한 후 정부에 지급을 의뢰하게 된다.

9) 제1절 내용은 나영선(2005), 이남철 외(2006)를 주로 인용하였음.

10) <http://www.capitaresourcing.co.uk/education>

모든 교육훈련기관은 개인학습계좌에 등록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등록과 운영을 위한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등록을 위한 조건(terms and conditions)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교육훈련기관은 거래하는 영국은행 계좌의 상세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교육훈련기관과 CAPITA 사이의 계약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기관은 법에서 규정한 건강과 안전상(HS: Health and Safety)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넷째, 교육훈련기관은 공공책임보험(PLI: Public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훈련기관은 등록에 있어 공공책임보험과 건강과 안전(HS)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훈련기관은 등록 양식을 작성,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운영조건(operational requirements)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기관은 정기적으로 재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 19세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셋째, 개인학습계좌 가입자 카드는 유효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 넷째, 합당한 학습내용과 범위를 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등록을 위하여 전자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여섯째,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시 주/월 단위를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계좌 가입자의 학습과정을 기록하고, 그 세부 정보를 CAPITA에 보고하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덟째, 명시된 학습내용과 과정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청구를 해야 한다. 아홉째, 운영 관련 세부 항목들은 해당기관(learnirect) 자료를 참고하도록 한다.

개인학습계좌의 등록 교육훈련기관은 위에서 명시한 조건을 갖춰야 함은 물론, 기관의 상세정보, 프로그램 내용과 방식, 등록 계약서, 대금지급계약서, 공증된 품질기준인정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학습계좌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이 중단된 2001년 3월까지의 가입자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계좌를 개설한 사람 중 실제로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50% 미만이었으며, 남녀 간의 사용비율에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대로는 19-40세의 가입자 수가 많았으며, 실제 사용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다. 직업별 가입자 수는 사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 주부, 기술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수는 주부(48.5%), 자영업, 단순 노무직 순으로 나타났다(<표 IV-1> 참조).

&lt;표 IV-1&gt; 개인학습계좌의 보유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좌 개설자	계좌 사용자	사용자 비율
성별	여성	709,728	310,480	43.7
	남성	532,528	229,500	43.8
	구분없음	3,786	2,171	57.3
	전체	1,237,042	542,151	43.8
나이	19-30	371,594	151,895	40.9
	31-40	367,395	159,362	43.4
	41-50	261,886	116,387	44.4
	51-60	158,532	74,115	46.8
	60 이상	77,635	40,392	52.0
	전체	1,237,042	542,151	43.8
직업	주부	103,241	50,040	48.5
	단순 노무직	67,318	30,112	44.7
	자영업자	42,119	18,886	44.8
	사무직	220,193	95,050	43.2
	전문직	120,279	49,920	41.5
	기술직	96,716	42,164	43.6
	교사	52,330	21,672	41.4
	알 수 없음	276,772	123,471	44.6
	기타	258,074	110,836	42.9
전체	1,237,042	542,151	43.8	

자료: 나영선 외(2005). 지역수요밀착형 및 취약계층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인 훈련 계좌제 시범적용방안 연구, p.30에서 재인용.

영국의 개인학습계좌의 중단원인은 다음과 같다. 영국 정부는 개인학습계좌 사업으로 인하여 전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증진시켜 국가적인 인력양성의 기회로 삼겠다는 큰 기대를 갖고 시행하였고, 실제로 사업시행 첫해에는 260만 개의 계좌가 개설되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의 설계 및 집행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5000여 명에 달하는 수가 자신도 모르게 금액이 청구되는 등 보안상의 문제와 제도의 설계 및 지원금의 남용으로 사업시행 1년 만에 중단하게 되었다(이남철 외, 2006).

영국의 공공회계위원회(Committee of Public Accounts)는 개인학습계좌 사

업 실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교육기술부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문제발생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제시하거나 검토하지 못한 채 급하게 사업을 시행하였다. 둘째, 계좌 가입 확대에만 집중해 나머지 사기, 남용의 가능성, 교육훈련의 질 저하 등의 문제에 대처하지 못했다. 셋째,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육의 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2001년에는 5,732명의 개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액이 청구되는 부당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넷째, 운영기관인 CAPITA의 역할을 규정하지 못하여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구축하지 못했다(나영선 외, 2005).

영국의 개인학습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s)는 2000년 9월 1일 제정된 학습기술법(Learning and Skill Act 2000: LSA)의 제 104조로부터 109조의 조항에 의해 그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시행령이나 규정은 주마다 별도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연간 총소득이 £18,000(약 3,60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연간 £200(약 4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총소득이 £1800 이상인 주민에게는 £100(약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ILA Scotland Homepage, 2008; Rutherford, 2008). 영국 웨일즈주의 경우는 주정부가 개인학습계좌에 매년 £200을 제공하되, 정부에서 인가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NQF(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3단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 2. 스코틀랜드의 개인학습계좌(ILA: Individual Learning Accounts)

스코틀랜드의 개인학습계좌(ILA: Individual Learning Accounts)는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업실행 1단계와 200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2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 개인학습계좌는 스코틀랜드 국민 모두를 교육훈련에 참여시킨다는 목표아래 개인학습계좌를 시행할 센터를 설립하고, 계좌의 자금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체의 후원을 받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업실행 첫째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시행 1년여 만에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

다. 그 후 2년여동안 문제점 진단, 분석, 시정, 보완을 거쳐 2004년에 재개하였다(나영선 외, 2005).

스코틀랜드의 개인학습계좌제의 시행 실패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학습계좌 사업이 중단되었던 2001년까지 대두된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첫째 원인은 계좌참여 대상과 참여 재정 부담에서 찾을 수 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든 계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이 절실히 필요한 구직자나 사회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1년도에 계좌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SVQ<sup>11</sup>) 수준 혹은 그 이상)을 이미 보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계좌이용률을 보였다. 즉, 계좌에 가입하여 지원을 받는 많은 수의 가입자들은 이미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학습에 참여해왔으며, 학습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교육훈련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의 취약계층 등 특정 대상을 목표 집단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또한 가입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교육훈련의 일정비용을 개인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학습에 대한 책무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발견하였다.

둘째 원인은 개인학습계좌와 비슷한 성격의 제도와 사업과의 연계 부족에서 나온 행정적 혼선이다. 제도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른 교육훈련 제도나 사업들과 연계해야 한다.

셋째는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 계좌가입 및 사용자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해당 교육훈련기관뿐만 아니라 계좌를 운영 관리하는 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넷째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참여자들의 설문결과 학습준비도 진단, 감독관의 기관 방문, 참여자들의 학습

11) SVQ(Scottish Vocational Qualification)는 스코틀랜드 직업자격증을 의미함. 거의 모든 자격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저 1단계에서 최대 5단계까지로 구분됨. 자세한 내용을 참고.

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수렴,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엄격한 검증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른 교육훈련 제도들과 차별성을 갖기 위하여 실질적이고도 혁신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 IV-2> 스코틀랜드의 2단계 개인학습계좌 신청자격 및 조건

목표집단 (연간소득)	지원금 (1년간)	개인기여금 (1회당)	소득증명서 제출	교육훈련 참여 조건	시기
£15,000 미만	£200	£10	필요	특별 자격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모든 프로그램	2004년 여름
£15,000 이상	£100	£10	불필요	SCQF level 5 혹은 동등자격 이상	2004년 4월

자료: 나영선 외(2005). 지역수요밀착형 및 취약계층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인훈련계좌제 시범적용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39에서 재인용.

2단계 개인학습계좌사업은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하여 2004년도에 재개하였다. 계좌가입조건과 신청절차를 보완하고,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개발하였으며, 교육훈련기관과의 협약서 체결을 추진하였다. <표 IV-2>는 스코틀랜드의 수정된 개인학습계좌 신청자격 및 조건이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영국의 CAPITA와 같이 개인학습계좌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인 Learndirect를 건립하여, 가입자들에게 상세한 교육훈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훈련기관의 등록요건을 개발하여 관리하는 체제를 추진하였다(나영선 외, 2005).

## 제2절 미국의 평생학습계좌제 분석<sup>12)</sup>

### 1. 미국 워싱턴 주의 평생학습계좌제

워싱턴 주의 평생학습계좌제는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직업과 관계된 교육·훈련의 자금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근로자들에 의해 운영되는데, 고용주와 대응된 저축계좌 개설, 고용주와 근로자가 더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동투자 등이 있다. 이러한 개념은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데, 평생학습계좌제 자금이 교육과 훈련에 사용되어 진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주 전체에 적합성으로 워싱턴 주 혹은 지방정부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평생학습계좌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자발적 참여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이전성으로 평생학습계좌는 현 고용주 및 근로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원한다면 계속 참여할 수 있다.

넷째, 정보에 근거한 선택가능으로 참가자는 교육·훈련을 선택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다섯째, 평생학습계좌제는 고용주와 협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기금을 통해 자금이 제공된다.

여섯째, 기금의 사용을 위한 선택권으로 참가자들은 교육과 훈련 기회의 범위를 위해 그들의 계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 평생학습계좌제(LiLAs)는 각 주별로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성인경험학습위원회(CAEL)에서 주관하고 있다. 성인경험학습위원회(CAEL)는 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국제조직이며 시카고(본부), 필라델피아, 뉴욕 등에 지부를 두고 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1986년 제정되었던 내국세법(Internal

12) 본 내용은 연구자가 워싱턴 주 평생학습계좌제 관계자들의 면담사례를 요약 및 분석한 것임.

Revenue Code)을 2007년 평생학습계좌제법(Lifelong Learning Accounts Act:LLAA)으로 개정하여 현재 의회(상원)에 계류 중이다. 평생학습계좌제는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히,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있다.

## 2. 워싱턴 주의 평생학습계좌제를 위한

2006년 워싱턴 입법부는 학생들에게 훈련과 교육에 있어 재정상의 재원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재정상의 지원을 늘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2007년 12월과 2008년 고등 교육을 위한 워싱턴의 전략적 구체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은 “승진을 위한 유연성과 재정 기술 향상 훈련과 직업개발”로 불리어 진다. 2008년 1월, 평생학습계좌제 파트너십 그룹은 개발 프로그램 정착과 수행방법의 모양을 갖추가기 시작하였다. 파트너십의 대표자는 주지사, 인력위원회, 워싱턴기업협회, Pacific Mountain Workforce Development Council, Health Work Force Institute, Higher Education Coordinating Board, Department of Community,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Washington State Labor Council and the State Board for Community and Technical Colleges를 포함하며 대표자는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에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 3.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워싱턴 주의 편익

워싱턴 주의 평생학습계좌제 파트너십은 워싱턴 근로자와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교육의 이익을 얻게 하고 교육의 재정적인 측면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워싱턴 주의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평생학습계좌제는 고용인에게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재정



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계좌제는 고용인에게 미래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수준 높은 노동력을 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4. 평생학습계좌제 등록 절차

##### 가. 고용주 등록 절차

평생학습계좌제 등록을 위한 고용주의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워싱턴 주 웹사이트에서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다.

2단계는 평생학습계좌제 웹사이트 평생학습계좌제 양식(LiLA Employer Registration-Form A1)에 접속해 회사등록을 한다.

3단계는 회사 등록 서식(동의서 양식 A2, 고용주 은행계좌)을 작성한다.

4단계는 평생학습계좌제 일정은 등록과정과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다.

5단계는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평생학습계좌제 등록 서식 B1과 평생학습계좌제 은행 등록 서식을 복사해 전송한다.

##### 나. 근로자 등록 절차

근로자들이 워싱턴 주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8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단계는 평생학습계좌제 정보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만약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근로자의 고용주에게 정보나 등록부를 받을 수 있다.

2단계는 워싱턴 주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에 완전하게 등록이 되면 다음과 같은 문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평생학습계좌제 고용인 등록
- 계정관리를 위한 동의서

- 평생학습계좌제 은행신청서
- 개설한 평생학습계좌제 예금계좌
- 임금 대장에서 공제액을 위한 평생학습계좌제 허가서

3단계로는 고용인의 동의서이다.

4단계는 평생학습계좌제저축계좌 개설 통지는 평생학습재정원(LiLA Fiscal Agent), 워싱턴경영협의회(Association for Washington Business, AWB)에 의해 보내질 것이다. 이 정보는 근로자의 계좌번호를 포함한다. 통지는 근로자의 고용주에게 보내질 것이고 평생학습계좌제계좌가 근로자의 임금장부를 맡게 될 것이고, 평생학습계좌제계좌의 소유권자이다. 만약, 고용주가 바뀌거나 근로자의 직업상태가 바뀌더라도 근로자의 계좌는 지속될 것이다.

5단계는 고용주의 자동이체 동의서이다.

6단계는 평생학습계좌제 경력개발계획(Career Development Plan) 등록 후 90일 이내에 양식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의 “입학정보”가 등록되면 동의 서명을 받을 것이며 2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 첫 번째 옵션 A - 자기 스스로 하는 경력개발계획을 웹사이트에서 사용  
·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두 번째 옵션 B - 경력 조언자를 통해 당신의 개발 계획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평생학습계좌제 저축계획 기부 시작 - 고용주에게 계좌의 자동이체를 통해 한 달 최소 20불의 기부를 요구한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가능한 기부를 장려하고 있다. 더 많은 기부는 근로자에게 수업료, 수수료, 책, 다른 교육 지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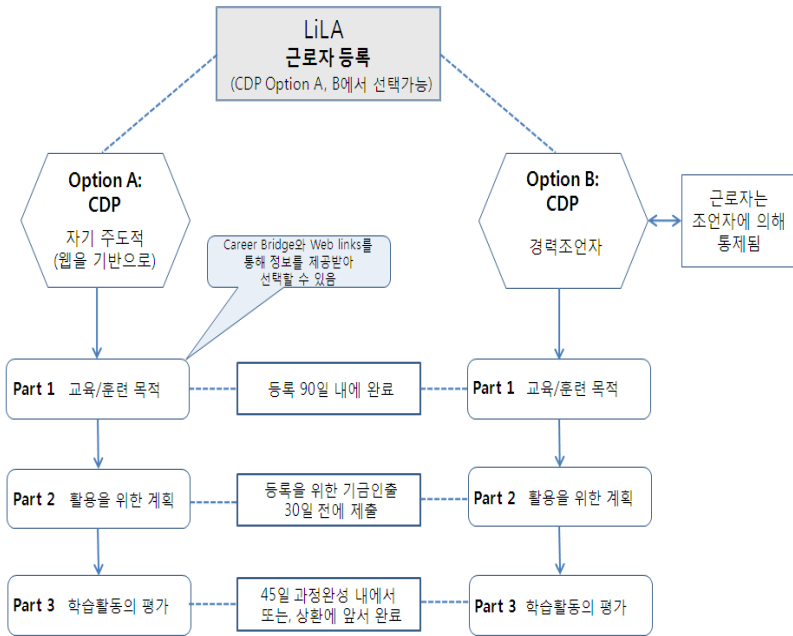
7단계는 평생학습계좌제 저축 계획 -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비용 지출에 대한 접근이다.

8단계는 평생학습계좌제 저축 계획 관리 - 평생학습계좌제 재무대리인(AWB)은 근로자에게 연 4회 예금 거래 명세서를 제공할 것이다.

## 5. 경력과 교육계획

[그림 IV-1]은 워싱턴 주의 두 가지 옵션을 통한 평생학습계좌제를 위한 경력개발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IV-1] 경력개발과정



근로자들이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때 그들은 반드시 90일 이내에 경력개발계획에 평생학습계좌제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평생학습계좌는 입학과정의 한 부분으로 근로자들은 2가지 옵션 중 한 개를 선택해야 한다. 옵션 A는 근로자들의 스스로 자발적이거나 경력이나 교육 목표에 약간의 도움만 주는 것을 말하고 옵션 B를 선택한 근로자는 평생학습계좌제 대표자와 도움을 위한 경력 개발 및 지원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개발 및 지원자는 자원봉사자로 고용주에게 할당되어지고 고용주 개발에 도움을 준다([그림 IV-1] 참조).

## 6. 워싱턴 주 평생학습계좌제 저축계획

워싱턴 주의 평생학습계좌제 계획은 현직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새로운 세금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투자목적을 위한 워싱턴 주 평생학습 저축 계좌가 개설 될 때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에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 개설방법 - 18세 이상, 평생학습계좌제에 등록된 사람은 누구나 수입에 관계없이 등록 할 수 있다.
- 소유권 - 평생학습계좌제의 소유자는 그들이 만든 세금의 모든 소유권을 유지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사용되어지는 자금을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관리한다.
- 융통성 - 평생학습계좌제의 회계담당자는 공인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재산을 회수할 것이다. 평생학습계좌제 자금은 미국 내 교육이나 유학에 사용되어 진다. 워싱턴 주 적격 훈련기관들이 아닌 사람들은 평생학습계좌제 관리자로부터 반드시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평생학습계좌제를 위한 기여

워싱턴 주의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의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최소 20달러 정도 기부해야 한다(1년에 최소 240달러 기부). 고용주는 근로자의 평생학습계좌제 세금이나 1년의 최대 기부금(1년에 최소 240달러 기부)이 총계에 달할 때 그에 알맞은 것을 공급해야 한다.

<표 IV-3>은 근로자의 평생학습계좌제 3년간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lt;표 IV-3&gt; 근로자의 평생학습계좌제 3년간 증가 추이

	매월최저기부금	연간예금	매월선택기부금	연간예금
근로자	12 @ \$ 20 =	\$240	12 @ \$ 501 =	\$600
고용주	12 @ \$ 20 =	\$240	12 @ \$ 352 =	\$420
합계(1년)		\$480		\$1,020
근로자	12 @ \$ 20 =	\$240	12 @ \$ 501 =	\$600
고용주	12 @ \$ 20 =	\$240	12 @ \$ 352 =	\$420
합계(2년)		\$960		\$2,040
근로자	12 @ \$ 20 =	\$240	12 @ \$ 501 =	\$600
고용주	12 @ \$ 20 =	\$240	12 @ \$ 352 =	\$420
합계(3년)		\$1,440		\$3,120

주: 1) 매달 20달러 이상의 근로자 기부금은 근로자에 의해 결정되어짐.  
 2) 근로자 마다 매달 20달러 이상의 고용주 기부금은 선택임.

## 8. 평생학습계좌제에 지원된 교육훈련 활동과 지원되지 않은 교육훈련 활동

### 가. 평생학습계좌제에 지원되는 교육과 훈련 활동

평생학습계좌제 기금은 더 높은 교육 수준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 훈련활동은 현재 근로자의 직업이나 직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경력이나 근로자의 경력개발계획의 제휴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 믿을만하거나 그렇지 못한 수업코스
- 현장/온라인 교육 수업
- 증명 및 자격시험
- 신뢰를 위한 사전지식평가(PLA)
- 실습을 위한 교육비용
- 영어가 외국어인 과정 코스
- 도서
- 관련된 경비와 장비
- 연구실이나 다른 교육과 연관된 요금

- 경력과 관련된 세미나 등록 요금이나 개인이나 직업과 관련된 워크숍
- 주차요금

나. 평생학습계좌제에 지원되지 않은 교육과 훈련 활동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제공된 프로그램이 워싱턴 주 평생학습계좌제 행정담당에 의해 공인된 것이 아닐 때
- 교통비
- 요구되어지지 않은 장비
- 아이 관리비
- 음식과 여행
- 방과 식비
- 자발적인 요금을 포함한 복사비, 운동비, 건강관리비 등이다.

9. 교육비용 지불

가. 옵션 1: 철회요구

근로자는 서면을 통해 교육비 철회요구를 할 수 있다. 요구서는 반드시 훈련에 등록된 날짜의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과태료 지불을 책임져야 한다. 평생학습계좌제 행정담당이 요구서를 승인하게 되면 그 지불 권한은 평생학습계좌제 재정 담당기관(LILA Fiscal Agent, AWB)에 이양됨을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의 질문이나 양식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이 기관과 해결해야 한다.

### 나. 옵션 2: 상환

근로자는 교육비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 상환할 때 근로자는 평생학습계좌제 상환 요구서 양식을 제출해야 하고 근로자가 지불책임을 져야 한다면 즉시 상환해야 한다.

## 10. 기타 참고 사항

### 가. 이의 신청

평생학습계좌제 자금의 회수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서면을 통해 재고 여부를 항소할 수 있다. 제출된 요구서에 고용인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된 평생학습계좌제 자금 지출에 관한 설명과 정당한 지출 여부에 관한 서면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요약서 중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요구할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 행정담당은 3번의 재 검토후 고용주에게 근무일자로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 나. 교육 또는 훈련 완성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45일 이내에 반드시 훈련 수료를 첨부해야 한다.

- 등급 이수 사본
- 교육 훈련 공급자의 증명서
- 졸업증명서

### 다. 교육 또는 훈련활동을 마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없다면, 평생학습계좌제 행정담당은 가능한

빠른 공지와 자금을 회수해야 하고 근로자는 총 회수 자금의 일부를 변상해야 한다.

라.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없거나 종료할 경우

근로자가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때, 평생 학습프로그램 행정담당에게 결정을 알려야 하고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반드시 임금 공제의 중지를 알려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워싱턴 주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의 중지를 결정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자금을 지불해야 하고, 반드시 즉시 이 사실을 고용주와 워싱턴 주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 행정담당에게 통지해야 한다.

마. 세금과 평생학습계좌의 보고

평생학습계좌제는 일반적으로 이익을 위한 특별한 세금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주는 세금공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계좌제 기부금의 특별한 처리법은 현재의 세법에 관련하여 제한적이다.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와 고용주는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 참여의 세금 영향을 개인의 세금 관리자와 함께 상의한 것을 참고해야만 한다.

바. 프로그램 평가

워싱턴 주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은 근로자들, 고용주들과 지역과 국가책임자가 프로그램 성공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모든 평가 활동은 가능한 짧고 평가범위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의 모든 정보는 기밀이 지켜져야 한다.



## 사. 비밀준수

워싱턴 평생학습계좌제프로그램에 의해 수집된 모든 근로자 정보는 평가와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 진다.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는 법에 의해서만 공개하며 워싱턴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의 선택된 사업은 수집된 정보와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나 다른 동일한 정보에 의해서만 보고된다. 평생학습계좌제 저축계획 관계자는 법의 허락을 제외한 현재나 그 이전의 비공공적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 11. 미국 의회에서의 최근 평생학습계좌제 법 개정 논의

#### 가. 2007년도 평생학습계좌제법 입법화 논의

상원의원 Maria Cantwell(D-WA)과 Olympia Snowe(R-ME)에 의해 도입되어, 1986년 미국내국세법 개정을 통해 법안이 마련되었다. 10개 주, 200,000명의 근로자를 위해 평생학습계좌제 시범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며 미 재무부는 입찰제도를 통해 참여할 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요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계좌제를 시행하는 주에 속한 근로자들은 평생학습계좌제에서 5,250달러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평생학습계좌제는 세액대비 500달러까지 평생학습계좌제에 기부한 총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는다.

셋째, 프로그램 해당자는 평균수입자들 혹은 낮은 조세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 나. 2008년도 평생학습계좌제법 개정 논의

하원의원 Rahm Emanuel(D-IL)과 Jim Ramstad(R-MN)에 의해 도입되어, 1986년 미국내국세법 개정을 통해 법안이 마련되었으며 2008년에도 법안이 계

류 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훈련의 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주요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는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매년 2,500달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해당자는 평균수입자들 혹은 낮은 조세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셋째,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평생학습계좌제 기부금에 알맞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넷째, 고용주 기부금은 근로자의 수입에 따라 고려할 수 없다.

다섯째,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계좌로 만들어진 연간 2,500불 기부금에 따른 25% 세금을 공제한다.

여섯째, 소규모업체(100명 내외)의 고용주들은 과세대상의 총 예금 잔고에서 매년 500불을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 초기 3년 동안 관리하는 비용으로 제한한다.

### 제3절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외국의 평생학습비 지원 제도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 제정 공동 지원 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해관계자, 국가를 비롯하여 기타 공동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재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직업능력 개발의 현실화, 기업의 혁신과 대응활동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가 부담하는 영국의 개인수업료계좌(Individual Tuition Accounts) 시스템은 성인실험교육위원회(CAEL; Council on Adult and Experimental Learning)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700개 이상의 단과대학, 종합대학, 기업, 노동조합, 개인들이 회원으로 확보되었으며, 고용주와 교육 및 훈련 전략을 공동으로 논의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용인

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요구를 조언하고 있다.

둘째, 격변하는 작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실무적 수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영국과 미국의 평생학습 재정 지원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자 문제로 한 때 프로그램이 중단된 영국의 사례를 잘 분석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직업훈련에 대한 개인의 노력과 정부, 기업의 재정 지출도 장려하는 제도의 조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평생학습계좌제 담당 부처는 노동부이며 운영주관은 성인경험학습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납입하는 금액만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업에서 지원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 지원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영국에서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학습 혁명의 촉매로 특히, 교육기술부는 학습의 장애를 극복하는 기제로서 “Individual Learning Account(개인학습계좌제)” 프로그램을 운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이 25파운드를 투자하면 정부가 150파운드를 대응 투자하고, 아울러 고용주들의 투자도 장려되었다. 민간 차원에서는 Bournemouth시 소재 보험회사 Liverpool Victoria Friendly Society에서 개인학습계좌제도를 시도하여 근로자가 회사 측과 협의한 학습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때 본인이 25파운드를 투자할 경우 회사에서 200파운드를 지원하며, 특정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보너스로 50파운드를 추가로 지불하였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직업훈련 진입 불균등, 특히 초기직업훈련의 공공 혜택을 적게 받는 계층에 대한 불균등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1986년 내국세법을 개정하여 평생학습계좌제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08년 현재까지도 미국 상원에서 법안이 개류중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평생학습계좌제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많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제 5 장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따른 관련 재정 분석

제1절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예산 현황 분석<sup>13)</sup>

200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총지출규모는 273.8조원으로 2008년도 257.2조원보다 6.5% 증가한 수준이며, 이는 2005년 이후 총지출 기준으로 작성된 예산기준 아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은 전년에 비해 큰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추세적으로도 최근의 변화 추이는 사회 부문의 증가와 경제 부문의 감소를 따르고 있다.

전년대비 재원배분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 분야 5.2%, 사회분야 8.5%, 교육 분야 8.8%, 국방 분야 7.5%, 일반 행정 및 기타 4.0%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전년대비 재원배분 비중의 변화(총지출 대비)에서는 경제 분야 0.3% 감소, 사회분야 0.6% 증가, 교육 분야 0.3% 증가, 국방 분야 0.1% 증가, 일반 행정 및 기타 0.7% 감소를 보이고 있다.

<표 V-1>은 2009년도 총지출 대비 각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표 V-1>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분야는 전년도 대비 0.3%, 일반 행

13) 본 절은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2007~2011”을 주로 인용하였음.

정 및 기타 0.7% 감소한 반면 사회 분야 0.6%, 교육 분야 0.3%, 국방 분야 0.1% 증가하였다.

<표 V-1> 2009년도 총지출 대비 각 분야별 자원배분 비중 현황

(단위: 조원, %, %p)

	2008		2009(안)		비중 증감 (B-A)
	금액	비중(A)	금액	비중(B)	
사 회	75.4	29.3	81.8	29.9	0.6
교 육	35.6	13.8	38.7	14.1	0.3
경 제	57.6	22.4	60.6	22.1	△ 0.3
국 방	25.9	10.1	27.8	10.2	0.1
일반행정 및 기타	62.7	24.4	64.9	23.7	△ 0.7
총 지 출	257.2	100.0	273.8	100.0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주: 1. 2008년 본예산기준.

2. 사회분야: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환경.

3. 경제분야: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수산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통신, 과학기술.

4. 일반행정 및 기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 외교, 예비비.

<표 V-2>는 분야별 요구현황을 2008년과 2009년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통일·외교 21.6%이며 SOC 분야는 2.4% 감소하였다. 교육 분야의 경우 전년대비 8.8%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 교부금 2.7조원, 맞춤형 장학제도 구축 0.3조원이 증액되었다.

&lt;표 V-2&gt; '09년 분야별 요구 현황(총지출 기준, 예산+기금)

(단위: 조원, %)

분야	'08년	'09 요구	증가율	증감사유
1. 사회복지·보건	67.7	74.1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노령연금 +0.8조</li> <li>▪ 노인장기요양보험 +0.2조</li> <li>▪ 공적연금지출 +2.9조</li> </ul>
2. 교육	36.0	39.2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교부금 +2.7조</li> <li>▪ 맞춤형 장학제도 구축 +0.3조</li> </ul>
3. 국방*	26.6	29.0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비유지, 연료확보 +0.3조</li> <li>▪ 기동전력, 시설건설 +0.6조</li> <li>▪ 국방연구개발 +0.2조</li> </ul>
4. 공공질서·안전	11.7	12.2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운영지원 +0.3조</li> </ul>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6	12.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 + 1,344억</li> </ul>
6. SOC	19.6	19.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건설 등</li> </ul>
7. 문화·관광	3.3	3.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시설사업 완료(디지털 도서관, 부산국악원)로 감액 요구</li> </ul>
8. 환경	4.5	4.5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종합대책 +319억</li> <li>▪ 폐기물자원화사업 +284억</li> </ul>
9. 농림수산	16.0	15.9	△0.7	-
10. 통일·외교	2.8	3.4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0.6조</li> </ul>
11. 일반공공행정 (지방교부금)	45.9 (29.0)	47.9 (30.7)	4.4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부금 +1.7조</li> </ul>
합 계	246.7	261.3		

\* 국방비는 일반회계 총계기준.

<표 V-3>은 2009년도 교육부문예산을 사업별로 전년도와 비교한 것이다.  
<표 V-3>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일반부문의 경우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되

었다. 그러나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경우 431억 원이 증가되었다. 특히, 평생 학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7억 원과 평생학습계좌제 부문은 신규 사업으로 9억 원이 신설되었다.

교육 분야 중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기반구축 및 활성화 사업에 8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는 국가평생 교육통계 구축, 평생학습진흥 지원, 여성능력증진 지원,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지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지원으로 727억 원을 지원하며 본 세부사업은 산학협력 중심대 22교, 학교기업 50교, 지역혁신 인력양성 사업 92개 과제 등이다.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으로 2,310억 원을 지원하며 본 세부 사업으로는 현장적합성이 높은 실무 기술인력양성 전문대학을 육성 지원, 교육여건 지표 포물러에 의하여 우수한 전문대학 선정 지원(수도권 40%, 지방 60%)등이다. 전문대학생 근로 장학금 지원 및 해외인턴십을 위해 131억 원이 지원되면 본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는 저소득 학생 근로와 장학금 연계, 지방 2,400명, 수도권 1,600명,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수행 지원(800명, 6.4백만 원) 등이다. 산업기술인력양성 사업으로 80억 원을 지원하면 본 세부 사업으로는 미취업 이공계 대졸 전문 인력에 산업체 연수기회 제공(1,760명, 4.55백만 원)하는 것이다.

여학생 공학교육에 36억 원을 지원하며 세부 사업으로는 여성공학교육 선도 대학 지원(5개 권역, 2억 원), 여성공학 기술인력 양성(60개 팀, 3백만 원), WISE 프로그램 지원(14개 지원센터)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위해 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세부 사업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습비 지원으로 자기주도적 능력개발을 지원,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이다.

평생학습계좌제의 사업기간은 '09년~계속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9.12억 원이며 '08년에는 특별교부금 9.9억 원이다. '08년 사업규모는 학습이력관리시스템, 평가인정체제, 상담 등 학습자 지원체제 구축 8.5억 원과 인건비 지원 0.62억 원이다. 지원형태는 민간보조이며 사업 시행주체는 평생교육진흥원이다. 본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학습결과의 누적관리와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로 평생교육



을 촉진하는 것이다. 학습이력관리로 학습결과와 인정 및 사회적 활용 극대화  
와 학습비 지원, 상담·정보제공 기능 강화로 학습선택권 확대 및 평생학습 참  
여율 제고 등이다. 또한 학습이력을 관리하여 학벌보다는 다양한 평생학습결과  
를 포함한 능력 중심의 인재를 활용 가능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학습비  
지원으로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기회 확대 및 학력 격차에 의한 빈곤의 대물림  
을 완화시킬 수 있다.

&lt;표 V-3&gt; '09년 교육부문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08년	'09안	비고
▪ 유아·초중등교육	307,631	338,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육재정교부 : 306,388-&gt;335,544</li> <li>▪ 영어봉사장학생 : 101(신규)</li> <li>▪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 27-&gt;29</li> </ul>
▪ 고등교육	41,811	41,8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보자 장학금 : 700-&gt;1,090</li> <li>▪ 학자금 신용보증 기금 : 2,907-&gt;3,234</li> <li>▪ 이공계 장학금 : 861-&gt;897</li> <li>▪ 세계적 수준 연구중심대학 : 1,650-&gt;1,650</li> <li>▪ 지방대 경쟁력 기반 확충 : 3,033-&gt;3,352</li> </ul>
▪ 평생·직업교육	4,464	4,8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직업인력양성대학 : 2,310-&gt;2,310</li> <li>▪ 대학평생교육활성화 : 25-&gt;28</li> <li>▪ 평생교육 진흥원 출연 : 6-&gt;27</li> <li>▪ 평생학습계좌제 : 9(신규)</li> </ul>
▪ 교육일반	1,645	1,2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학정보 보호사업 : 23-&gt;34</li> </ul>
교육 분야 계	355,551	386,731	8.8% 증
(예산)	353,764	384,797	8.8% 증
(기금)	1,787	1,934	8.2% 증

노동부의 2009년도 사업 예산 중 사회적 기업육성 및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12년까지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08년 170개에서 '12년 1,000개), 경력단절여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일센터” 운영('09년 50개) 및 주유·택배원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09년 128천개),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08년 10천명에서 '09년 40천명) 운영사업이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예산은 2008년 207억 원에서 634억 원으로 427억 원 증가하였다(<표 V-4> 참조).

<표 V-4>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2009년)

(단위: 억 원)

구 분	'08	'09안	비고
벤처창업활성화지원	7,810	13,008	창업활성화 융자 : 6,400 → 10,000억 원
Job-Training 강화	1,018	2,745	글로벌·미래산업 : 1,018 → 2,006억 원
직업능력개발지원	14,242	14,45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207 → 634억 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10,458	10,950	사회적기업 육성 : 296 → 783억 원
여성·노인일자리 지원	833	1,040	노인일자리 : 117 → 128천개
계	34,361	42,196	22.7% 증

자료: 기획재정부(2008). '09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노동부의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훈련 확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직업훈련 참여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훈련계좌(연간 200만원)를 발급받아 자신이 원하는 훈련을 선택·참여하는 제도이다. '08년에는 대구·광주지역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09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방안이다.

## 제2절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따른 소요재정 추정

<표 V-5>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 분야 재정운용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정부는 교육이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양질의 인적자원개발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왔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교육 분야는 연평균 6.8% 수준 증가하였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과 아울러 유아 및 초중등부문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19.4%에서 2008년부터는 20.0%로 인상한 바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4년 18.4조 원, 2005년 23.7조 원, 2008년 30.6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lt;표 V-5&gt; 교육분야 재정운용 추이, 2002-2006

(단위: 조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가율
교육 분야	22.1	24.6	26.3	27.7	28.8	6.8
예 산	22	24.5	26.1	27.5	28.7	6.8
기 금	0.1	0.1	0.1	0.1	0.1	△2.0
유아 및 초중등부문	19.1	21.3	22.8	24	25	7
고등교육부문	2.7	2.9	3	3.3	3.4	6.1
평생·직업교육부문	0.3	0.3	0.3	0.3	0.3	0.6
교육일반부문	0.06	0.07	0.07	0.07	0.09	9.6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2002-2006).

고등교육 부문 역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대학특성화 사업, 대학구조개혁 지원 등 대학교육의 역량강화에 중점 투자되어 왔다. 이러한 재정투자의 결과 교육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SCI 논문 게재수가 대폭 확

대되는 등 연구력이 향상되고 있다. SCI논문 수는 2000년 12,013편(세계 16위), 2006년 22,750편(세계 11위)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복지기반 확충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 유아 교육지원,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6년 시범 실시한 방과후 학교사업 실시 이후 1인당 월평균 과외비가 6만2천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이 교육양극화 완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6년도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전국 초중고교의 98.7%, 전체 학생의 41.9%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도 2학기부터는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정부보증 학자금 용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용자제도를 통해 2007년도 1학기까지 총 100만여 명에 대해 3조 2천여억 원에 상당하는 등록금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2학기부터는 무이자 용자 및 이자보전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한 바 있다. 이밖에도, 만 3~5세 저소득층 및 장애우에 대한 유아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표 V-6>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 사업 분야별 재정 투자계획을 설명한 것이다. <표 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기간 동안 증가율은 학자금 대출 등 12.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교육재정교부금 9.2%, 교육 분야 8.6%, 교육일반분야 8.3%이다. 그러나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비하여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 5.5%,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은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V-6>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재정투자계획이다. 대학이 국가성장과 사회통합의 핵심동력(driving force)으로, 미래의 국가·사회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사회계층에 대해 균등하게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 및 고등교육의 국제화 추진,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인력양성 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 분야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을 통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민밀착형 초·중등교육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고등교육은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교육 분야의 투자 총량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효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인적자원투자에 대한 종합조정·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적자원 투자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2011년 재정투자를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 분야 재정투자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복지 확충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8.6%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등교육 부문은 소외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고등교육 인프라 및 연구력 향상 등을 위해 투자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투자규모를 1조원 수준 확대하여 대학이 국가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00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및 금리 인하를 통해 대학이 사회계층 이동(Social Mobility)의 주요 통로가 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2008년부터 도입한다. 선정된 대학은 해외 석학 초청, 특성화 분야 연구비 지원 등 비교우위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제2단계 BK21사업(2006년~2012년)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석·박사 과정 학생 및 박사학위 취득 후 신진 연구 인력의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계 200위권 내 대학이 2006년 총 3개였고, 2012년까지 10개 대학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공계 분야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비도 확대하여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의적 개인 또는 소규모 공동연구비가 증액되고,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수혜율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글로벌 스탠다드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입 전형의 다양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학사정관제(Admissions Officer)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2007년 360명이었고, 2011년에는 1500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도입학교는 2007년 10개교였고, 2011년에는 40개교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우수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공급을 위해 2008년부터 우수 산업인력양성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체의 대학 간 공동프로젝트 추진, 산업체 강사 초빙을 통한 현장 적합성 있는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대학과 산업 간의 인력 불일치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유도를 위해 주문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되며, 지방대와 출연연구기관간의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산학협력중심대학은 2007년 23개교이었고, 2011년 35개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의 연구기반 확보를 위해 실험실습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동·강의동·실습관 등 국립대학의 강의 및 연구여건에 개선에 중점 투자하고, 사립대학의 기숙사·연구시설 건립 등에 대한 융자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확대를 위해 농산어촌지역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재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간 연계·조정,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 등 추진체계 효율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만 5세 아동 무상교육의 지원 대상을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소득의 100%에서 2009년부터 130% 가구로 확대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과 학습도우미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영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에 원어민 영어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토익·토플을 대체할 초·중등 학생용 영어시험 개발에도 필요한 지

원을 할 계획이다.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인프라구축 및 활성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평생교육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 수 감소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대학에 활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교육의 산실인 전문계 고등학교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수요부처와 연계하여 특성화·다양화함으로써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기술 및 인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인적자원정책의 과학화를 위해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체계, 자격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화를 위해 조사·분석·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적자원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유학생유치, 국제교육교류·협력, 재외동포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 V-6> 교육 분야 재정 투자 계획, 2007-2011

(단위: 억 원, %)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증가율
교육 분야	314,074	356,654	380,062	406,857	437,043	8.6
[증가율]		13.6	6.6	7.1	7.4	
교육교부금 제외시	44,962	50,717	51,567	53,097	54,880	5.1
[증가율]		12.8	1.7	3.0	3.4	
예산	312,841	354,866	378,642	405,398	435,413	8.6
[증가율]		13.4	6.7	7.1	7.4	
기금	1,233	1,787	1,420	1,459	1,630	7.2
[증가율]		45.0	△20.6	2.8	11.7	
고등교육	35,863	44,472	45,242	46,532	48,149	7.6
[증가율]		24.0	1.7	2.9	3.5	
학자금대출 등	2,189	3,907	3,500	3,500	3,500	12.5
학술연구	3,654	4,432	4,443	4,451	4,468	5.2
초중등 교육	273,800	307,160	329,611	354,921	383,281	8.8
[증가율]		12.2	7.3	7.7	8.0	

<표 계속>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증가율
교육재정교부금	269,112	305,936	328,495	353,760	382,163	9.2
평생교육	3,318	3,764	3,876	3,990	4,113	5.5
[증가율]		13.4	3.0	3.0	3.1	
평생학습 및 직업	2,662	2,851	2,878	2,901	2,925	2.4
국제교육협력	375	422	397	408	416	2.6
교육일반부문	1,092	1,256	1,334	1,414	1,500	8.3
[증가율]		15.1	6.2	6.0	6.1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2011.

<표 V-7>은 연차별 평생학습계좌제 확대도입과 재정요소를 분석한 것이다 (이영, 2008).

<표 V-7> 연차별 평생 학습계좌제 확대도입과 재정요소

영역	시범운영기	1단계		2단계	3단계
	2008	2009	2010	2011	2012
<b>중점 추진내용</b>					
제도 기반	-법제도기반 마련 -인프라구축 -평가인정체계 마련	-제도 확산 -시범운영확대 -지역추진체제정비 -평가인정체계 운영		평생학습 전 영역에 대한 평가인정체계 구축	전 국민의 평생 학습 생활화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학습비 지원	시범운영도시 지원자	학력 및 자격취득을 위한 부분대상자 중 1%		학력 및 자격취득대상자 중 1% 사회통합대상자 중 1%	학력 및 자격취득대상자 중 2% 사회통합대상자 중 1%
학습이력 관리	성인 문해 교육 지원 학습자 및 마을평생학습리더	기초문해교육, 직무소양교육, 학력보완 교육영역 학습자		평생학습 전영역학습자	평생학습 전영역학습자

<표 계속>



성과목표					
(단위: 만 명)					
학습이력 관리	1	10	20	100	610
학습비 지원		6	6	12	20
재정소요					
(단위: 백만 원)					
계	820	62,250	62,750	123,350	203,350
경상비		1,000	1,000	2,000	2,000
협의회 운영		50	50	50	50
정보시스템	610	1,400	1,600	1,200	1,200
조사연구		100	100	100	100
학습비지원	210	60,000	60,000	120,000	120,000

자료: 이영(2008).

그러나 향후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추정하는 것은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학습비 지원 대상과 지원액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표 V-7>에서 연차별 평생학습계좌제 확대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를 최근 연구자가 제시한 것이지만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의 향후 단계별로 학습비 지원 확대 방안과 소요 재원을 추정한 것에는 엄청난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V-8> 부처별 및 연구자 소요 추정 인원 및 소요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교육과학기술부(1)	예산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평생학습계좌제 실행		
		9.9(특교)	9.1	10	10	10
	학습 계좌 개설 인원	5천명	2만명	7만명	13만명	20만명
노동부(2)	지원 대상	일부 전직·신규실업자 시범 실시		비정규직 근로자(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제 통합)	중소기업 근로자(근로자 수당 지원금제 통합)	
	예산	204(기금 102, 일반 회계 102)	634(기금 476, 일반 회계 158)	-	-	-
계(1+2)		111.9	1,286.2			
이영		8.2	622.5	627.5	1,233.5	2,033.5

주: 1) 교육과학기술부 학습계좌제,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임. 2) 노동부의 경우 시범실시 경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신중적으로 조정 예정임. 3) 특교: 특별교부금.

대통령인수위원회가 평생학습계좌제 단계별 도입방안에 근거한 통합적 평생 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학습비 지원 대상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표 V-9> 참조).

&lt;표 V-9&gt;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학습비 지원 대상 산정

구분	학습계좌제 지원 대상	대상 인원수(만 명)
1단계 (’08년 하반기)	- 저학력 성인 - 고용보험 가입 실업자일부	-저학력 성인(’05): 599명(학습비 지원 제외)(학력 인정) -고용보험가입 실업자 일부(’06): 94명 *전체 수: 943명(’06) 계: 94명
2단계 (’09년~)	1단계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계층 일부 - 50인 미만 중소기업근로자 - 청소년 - 체대군인 등	1 단계 해당자: 94명  -기초생활수급대상자(’06): 145명 -차상위계층 일부(10%): (’05)26명 *전체 263명 -50인 미만 중소기업: 512(’05) -청소년: 2명(’07)(고등학생 중 사망, 질병을 제외한 탈락자) -군 현역제대 예정자: 27명(’07)  소계: 712명 계: 806명(1 단계 해당자 포함)
3단계 (’11년~)	1 단계 및 2단계 지원대상자  - 전체 중소기업 - 근로자 - 경력단절 여성 - 노인 등 일반 국민	1단계, 2단계 해당 대상자: 806명  - 중소기업 근로자: 306명(’05) - 경력단절 여성: 125명(’06) - 노인: 436명 (’05) - 일반 국민(소외계층): 248명 국제결혼이주자: 8명(’07), 장애우: 201명(’07), 상이군경 등 보훈대상자: 31(’06), 새터민: 8명 소계: 1,115명
		계: 1,921명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연보(200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7);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통계(2007); 통계청, 사회지표(2007).

주: 1) 학습비 지원대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자료에 근거하였음. 2)경력 단절 여성이란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상황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함.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 수는 2006년도 경제활동 여성인구 중 30-39세 여성의 54.2%가 육아, 가사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연령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 수 232만 명을 모수로 하여 산정하였음.

<표 V-10>, <표 V-11> 및 <표 V-12>는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학습비 지원 해당자를 전체 해당자에서 각각 20%, 10% 및 5%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였다. 전체 학습비 지원 대상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방안 중 제시한 학습비 지원 대상을 관련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1인당 학습비 지원액은 현재 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계좌 시범 적용 시 200백만 원(본인 부담 20%)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8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본 추정 소요 자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1인당 학습비 지원 단가인 80만원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노동부의 지원 단가를 적용할 경우는 2배에 해당하는 소요 예산이 추정된다.

<표 V-10>은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을 전체 해당 지원자를 20%로 산정하여 적용한 추정 예산액이다. <표 V-10>에서 볼 수 있듯이 1단계 기간에는 19만 명, 15,200,000만원이 추정되며, 2단계 기간에서는 161만 명, 128,800,000만원, 마지막 3단계 기간에는 384만 명, 307,200,000만원 예산이 추정된다.

<표 V-10>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안):

해당자를 20%로 산정

(단위: 만 명, 만원)

	전체 학습비 지원 대상자 수	20% 해당자	1인당 지원액	총 학습비 지원액
1단계	94	19	80	15,200,000
2단계	806	161	80	128,800,000
3단계	1,921	384	80	307,200,000

<표 V-11>은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을 전체 해당 지원자를 10%로 산정하여 적용한 추정 예산액이다. <표 V-11>에서 볼 수 있듯이 1단계 기간에는 9만 명, 7,200,000만원이 추정되며, 2단계 기간에서는 80

만 명 64,000,000만원, 마지막 3단계 기간에는 192만 명, 153,600,000만원 예산이 추정된다.

<표 V-11>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안):

해당자를 10%로 산정

(단위: 만 명, 만원)

	전체 학습비 지원 대상자 수	10% 해당자	1인당 지원액	총 학습비 지원액
1단계	94	9	80	7,200,000
2단계	806	80	80	64,000,000
3단계	1,921	192	80	153,600,000

<표 V-12>는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을 전체 해당 지원자를 5%로 산정하여 적용한 추정 예산액이다. <표 V-12>에서 볼 수 있듯이 1단계 기간에는 4만 명, 3,200,000만원이 추정되며, 2단계 기간에서는 40만 명, 32,000,000만원, 마지막 3단계 기간에는 96만 명, 76,800,000만원 예산이 추정된다.

<표 V-12>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안):

해당자를 5%로 산정

(단위: 만 명, 만원)

	전체 학습비 지원 대상자 수	5% 해당자	1인당 지원액	총 학습비 지원액
1단계	94	4	80	3,200,000
2단계	806	40	80	32,000,000
3단계	1,921	96	80	76,800,000



## 제 6 장 결 론

### 제1절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의 의의 및 추진 전략

#### 1.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의의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성인의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 및 직무관련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07년 25세 이상 성인의 1년 동안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9.8%이며 직무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10.5%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직무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저조 등으로 인해 평생학습의 결과가 노동시장의 성과로 연계되지 못하여 평생학습 참여의 노동시장 이행성과가 미흡하다. 또한, 개인의 프로그램 선택권 제약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학습 선택권이 미흡하다. 특히 학습비 지원과 학습 이력관리의 분산 운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노동부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분야 학습비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는 학습결과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인정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평생학습 추진 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는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국민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습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비 지원과 학습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하여 평생학습자의 선택권 확대와 학습결과의 누적관리로 평생교육 촉진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생애에 걸친 자기주도적 능력개발과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여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학습비 지원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확충하는 것이다.

## 2. 평생학습계좌제의 추진 전략

첫째, 평생학습 공급기반 확대 및 통합적 교육훈련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평생교육센터, 고용지원센터, 교육청,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직업능력 개발 지원 전달체계 간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인적·물적 평생학습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전문대를 지역 내 평생학습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한 훈련기관, 업종별 협회, NGO 등 역량 있는 민간 기관을 평생학습계좌제 공급기관으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정규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 평생교육 공급기관에 대한 질 관리 및 인증평가를 통한 통합적 평생교육 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학습비 지원과 학습 이력관리를 통합하는 학습계좌제를 단계별로 도입·확산하여야 한다.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한 학습비 지원과 학습결과 평가인정체제를 구축하며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성인의 인품·능력·가치의 통합적 성장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직무기초능력,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직업·평생 교육을 아우르는 평생학습계좌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실업자 일부, 저학력 성인 등에 대한 우선 시범실시 후, 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일반국민 등에 대해 학습비와 이력관리를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형 계좌제를 운영하고 단계별 학습계좌 지원 대상 및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전 생애단계별 학습결과 평가인정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학습결과에 대한 학점 인정 확대로 평생학습계좌제와 대학, 원격대학, 학점은행제간 통합체제를 형성하고 민간자격·비형식 학습결과를 포괄한 국가자격체제의 재설계와 연동하여 교육-훈련-자격-학력이 호환이 가능한 학습결과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노동부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인 평생학습계좌제협의회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견 수렴의 장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평생학습계좌제 실행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평생학습계좌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은행·기업체 등 민간기관을 평생학습계좌 등록·지원기관으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평생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 제2절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위한 실천과제

### 1. 단기적인 실천 과제

#### 가. 시범사업의 체계적인 성과 분석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10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학습프로그램 평가인정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 한편, 현재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76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평생학습도시 중 5개 도시를 선정하여, 그간 평생학습도시사업을 통해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평생학습 인프라와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2009년 6월까지 추진되는 금번 시범사업에

서, 기 추진 중인 평생학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약 5,000명 정도의 학습계좌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전국 단위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2012년까지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후 2013년부터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현행 훈련기관 중심의 실업자훈련을 수요자(훈련생) 중심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전환하고 2008년에는 대구·광주 지역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09년에 전국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10년 이후에는 실업자훈련에 전면적용하며, 이와 훈련체계가 유사한 근로자수강지원금제(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단계적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양 부처는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성과를 전문연구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나. 학습비 지원 방식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학습비 지원 방식을 통일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 부처의 사업목적, 사업대상, 전달체계 등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용어의 통일보다는 부처별로 사업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비 지원의 경우 학력 비인정 과정의 직업능력개발 또는 직업훈련 부문은 대상·과정내용의 중복우려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자(구직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관련은 노동부가, 일반국민(근로자, 구직자 제외) 대상 학력취득, 기초문해·소양, 시민참여 프로그램 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로 기관 간 업무 분담하는 한편, 비학력 과정인 직업능력개발 관련 프로그램의 사전 평가인정은

노동부가 ETPL시스템(적격 훈련기관 목록시스템), 훈련기관 평가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국정과제 수행에 두 부처가 공동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다.

#### 다. 지원 대상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이력관리 대상은 평생학습 계좌제 등록을 원하는 평생학습자이며 학습비지원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수준과 예산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노동부의 이력관리 지원대상은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과정에 참여하는 구직자, 재직근로자로 하며 훈련비 지원은 '구직자, 재직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등 포함)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로 하며 '08년 실업자일부 시범실시 후 '0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에서 근로자(구직자 포함)를 완전히 배제할 것인지 여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여성인재육성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등이 배제되어 적절치 않으므로 기 지원 중인 대상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기 지원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 경우에도 사업대상·목적 등의 중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학습이력 관리 및 학습비 지원 대상에 있어서 학습이력 관리 대상자는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습비 지원 대상자는 재정 지원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이력 관리 대상자는 660만 명(성인의 1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성인 문해 교육대상자는 610만 명, 비직업교육 대상자는 전체 630만 정도로 추산되었다. 사회 통합적인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문해교육이나 기초적이며 일반적인 직업 관련 훈련이 부족한 장애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상이군경을 포함한 보훈대상자, 새터민, 국제 이주자, 출소자,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프로그램 기준에 있어서는 여가나 교양교육

보다는 초등수준의 학력인증, 직업교육, 시민교육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 라. 학습내용의 문제

직업능력개발이 초점이 되는 경우, 노동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여러 사업들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계좌라는 취지가 명확해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제도 시행 초기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이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직업 교육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서 비직업 교육이라고 함은 문해교육뿐 아니라 컴퓨터와 같은 기초적이며 일반적인 직업 관련 훈련을 포함한다(이영, 2008).

평생학습계좌의 대상, 학습내용, 관리 운용 방식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직업능력 향상”이라는 직무능력개발을 중심업무로, 또는 포함 대상으로, 또는 제외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것이다. “직업능력 향상”은 물론 평생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능력개발카드제를 포함하여 여러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주목표로 하는 평생학습계좌제를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업능력 향상이 아닌 평생학습관점에서 필수불가결한 여러 교육 사업을 평생학습계좌제의 체제 하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기간 미취업 상태에 처한 경제활동인구들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주요 지원 대상이 될 것이다.

#### 마. 재정 지원방식

학습 이력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비,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경상비, 제도 개선 연구, 협의회 운영 등은 당연히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방식을 직접적인 보조금 형태로 할 것인가 아니

면 간접적인 세금 감면을 통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실업자 직업훈련인 경우 세금감면 제공이 실질적인 보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취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평생학습의 경우이다. 세금감면을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학습에 대한 성과유인을 강화시키고 조세순응을 높이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이미 면세자인 경우 세금감면이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며 이미 높은 면세자의 비중을 더욱 높이는 단점이 있다. 여러 가지 관련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도입 초기에 있어서 일단은 보조금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방식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지원대상자에 따른 차등지원 여부이다. 소득분위 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미취업청년층, 군 전역 예정자, 장애인, 새터민, 국제 결혼자, 재취업 희망 경력 단절 여성, 취업희망 중고령자 등의 취업희망 평생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여를 보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영, 2008).

#### 바. 자원 조달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습계좌제 사업에 필요한 '08년 지원 예산이 없다. 다만 시범 사업을 위해 2008년도 예산은 9.9억 원이며 세부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전략계획(ISP) 수립 및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5.3억 원), 상담·정보제공 등 학습자 지원 시스템 구축(1억 원), 평가인정체제 구축(0.6억 원) 및 지역별 정책대상그룹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3억 원) 등이다. 본 시범 사업은 신청 규모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4~5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09년에는 중기재정계획상 26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학습이력관리 10천명과 학습비 지원 2천명을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2008년 전직·신규 실업자훈련 예산 절감분 204억 원 활용(기금 102억 원, 일반회계 102억 원), 2009년 전직·신규실업자훈련 예산 중 634억 원 활용(기금 476억 원, 일반회계 158억 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09년에는 중기재정계획상 35천명을 반영하였다.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물론, 학습자 개인, 기업, 사회단체, 선진국들처럼 정부가 학습비용을 분담하는 체제가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비직업 교육의 경우 기업들이 재원을 제공할 유인은 매우 작을 것이다. 사회단체나 개인의 기부를 통해서 일부 재원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의 수수가 가능한 형태로 재정 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평생학습계좌제가 현재 제안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습이력 관리와 문해교육을 포함한 비직업 교육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직업훈련 관련 고용보험 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평생학습계좌제를 위한 재원은 정부의 일반회계 재원에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이해 당사자, 전문가,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재정운영계획 내에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 평가인정 및 학습비 지원 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평가인정 및 학습비 지원 대상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직무능력향상교육·직업훈련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여부의 문제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직업능력향상교육은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명기되어 있고, 취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노동부 지원대상과 반드시 중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삭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학력인정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인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담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으나, 학력비인정 프로그램 평가인정의 경우 근로자(구직자) 대상·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원 사항은 노동부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떠한 종류의 평생학습계좌제이건 간에 공통적으로 표면화되는 것이 학습자의 종합적인 이력관리이다. 이력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무슨 이력을 관리할 것인지, 그 범주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학력인정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정규 학제에서의 학력인정 기준을 반영한 학습경험이 취사선택 기준이 되

어야 한다. 예를 들면 취업과 연관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반영하여 학습경험의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요구분석, 요구 분석에 터한 교육과정 선정,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기존 직무 분야 유경험자에 대한 인정 기준 작성 등의 세부 사항이 필요하게 된다. 자격, 학력, 고용 등과 별개로 경험 인정 기준을 국가가 요구하는 분야로 한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학력, 자격, 취미 등은 원하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한정하여 동 분야의 학습 경험에 한하여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표 VI-1 참조).

평가인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평생학습계좌제 실시 이전에 학습계좌에 포함될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강사들의 선정에 대한 평가체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비용지원의 사전·사후 관련부분인 평가인정에서 노동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사전 프로그램 인정-비용지원-사후평가는 분리되기 어려운 일련의 절차)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효과적인 교육·훈련 이력관리를 위해 양 부처 전산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통한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표 VI-1> 학습경험의 인정기준과 범위

경험 범주	경험인정 기준	결과 활용
모든 경험	개인이 원하는 모든 경험 (취미, 여가 포함)	평생학습 촉진
일부 경험	학력 관련 기준	학력, 학위 취득, 정규 학교 편입, 진학
	자격 관련기준	국가, 민간 자격 취득, 취득요건 구비
	고용시장 요구 기준	취업
	국가 지정 기준	취약분야 인적자원 양성

자료: 백은순(2008).

### 아. 자격과의 연계 및 자격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

자격과의 연계는 노동시장에서의 자격이 신호기재로서의 불충분성, 자격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가기술 자격의 등급 내 난이도 상이성, 각종 자격을 아우르는 국가시스템의 부재, 민간 자격의 난립과 난이도 일관성 유지의 실패 등 실제로 학습계좌제와 자격과의 연관을 위하여 사전에 조사 및 분석해야 할 선행 작업이 산재해 있다(백은순, 2008). 이수 시 자격취득 요건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격시행 부처, 자격 실시기관 등과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격 담당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점은행제가 대안적 학력인증으로 사용되듯이 대안적 자격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며 대안 체제 구축은 국가기술자격시스템과의 연계에서 고려해야 한다.

### 자. 추진 체계

#### 1) 중앙정부 차원

교육과학기술부는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기관·학습프로그램 평가인정, 평가인정심의위원회 운영, 학습계좌제 종합정보시스템(교육과학기술부) 운영 및 학습결과 평가인정, 이력관리 등의 정책을 집행한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평생교육지원기관 간 정보공유 지원 등 정책집행을 지원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업을 총괄하며 학습비 지원, 카드발급 및 프로그램 평가인정신청서 접수 업무를 담당한다. 평생학습기관은 학습프로그램 제공, 학습이력을 보고한다.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 팀을 구성(2008. 3. 31)하여 사업계획 수립, 법령·시행지침 제·개정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적합 훈련과정(ETPL) 심사를 위한 직종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좌제 관련 연구·자문 등 정책수립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향후 확대방안 연구 등을 수행한다. 고용정보원은 HRD-net 개편을 통한 정보



제공·이력관리 강화, 금융기관과 연계한 훈련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용지원센터는 상담 및 계좌를 발급한다. 금융기관은 훈련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및 HRD-net과 연계 등을 지원한다.

## 2) 지역 차원

지방자치 단체 수준에서 평생학습계좌제를 운영하고 관리할 센터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표준 평가모델을 고려하여 기관과 프로그램 및 학습자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수준의 특성화되고 자율적인 범위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학습계좌제가 실제로 운영될 배경은 지역이다. 지역 단위에서도 학습계좌제를 관리하고 운영할 시스템과 조직구조가 정비되지 않고, 전문 인력들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학습계좌제가 국민들의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기는 어렵다.

## 2. 중장기적인 실천 과제

### 가.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의 업무 조율 및 연계

평생학습계좌제의 추진계획 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이미 노동부가 직업훈련 분야에서 평생학습계좌제와 유사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운영하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와와의 업무 조율 및 연계 문제이다. 2008년 5월 15일 제1차 평생학습계좌제 협의회에서 평생학습계좌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리하였으며 양 부처 사업을 하나의 용어로 통합하기보다는 부처별 특성을 반영하는 적합한 용어를 각각 사용하고 이력관리는 연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전략 14(교육복지 확대) 중 과제 70에서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 과제에서 평

생학습계좌제 도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의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 부처가 각자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양 부처가 각각 현재 시범 사업 추진 과정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 평가를 실시해서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 나.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합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체제 구축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기관으로 논의되고 있다. 향후 직업교육과 비직업 교육이 융합함에 따라 노동부의 직업교육 관리체제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교육 관리체제가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비 지원과 학습프로그램의 평가인정 등에 있어서 전산시스템이 중요하므로 양 부처 전산전문가가 의견을 조율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평생학습결과의 누적관리를 위한 행정 기술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스템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력관리는 상담 기능을 포함하므로 시스템이 연계되면 불필요한 중복 예방이 가능하고 효과적 학습결과의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의 참여도 필요하다.

#### 다. 평생 학습계좌제 운영을 전담할 전문기구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지정·활용

국정과제 생성 시 학습비 지원과 학습 이력관리의 분산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즉 노동부의 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분야 학습비 지원

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습결과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인정체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 유관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평생학습계좌제 협의회<sup>14)</sup>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본 협의회에서 평생학습계좌제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 국민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계좌제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서는 학습결과의 인정과 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누적기록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전산망 및 평생학습계좌제의 전반적 사업을 담당할 담당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계좌제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상위 개념으로 정의는 하고 있지만 각각 해당 부처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위해 태생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평생학습계좌제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 방안이 될 것이다. 평생학습사회를 지탱하는 대안적 직업능력개발과 교육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라. 평생학습계좌제 사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및 적극적 활용

평생학습계좌제에 참여할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 및 시도교육청·평생학습관, 평생교육기관·시설 간 담당업무 합리화 및 파트너십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센터, 고용지원센터, 교육청,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 지원 전달 체계 간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인적·물적 평생학습인프라가 우수한 대학교, 전문대학

14)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간 중복을 방지하고 양 제도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 협의회 구성(총 12인)은 외부전문가(10인) : 현장전문가,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공무원(2인) : 양 부처 국장급 각 1인임.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부처별 소관과제 및 추진방안 등 논의.

을 지역 내 평생학습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한 훈련 기관, 업종별 협회, NGO 등 역량 있는 민간 기관을 평생학습계좌제 공급기관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각 기관 간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마. 안정적인 자원 확보

중장기적인 재정 소요를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따라 예산은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이 미흡한 수준이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하는 학습비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소요 재정을 추정하는 것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학습계좌 개설 및 소요 예산(안)을 제시하고 있다(<표 VI-2> 참조). 다만 노동부는 기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적인 측면에서 다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평생학습계좌제 시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평생학습계좌자금확보를 통해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평생학습계좌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점진적 운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를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시범운영으로 정하고 지역별 시범운영 후 전국 단위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학습이력관리체계 및 평가인정체계 구축(상담·정보제공 등 학습자 지원체제 포함)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2010년부터 2012까지 평생학습계좌제 실행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배려 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 학습이력 관리체제의 연계·운영을 통한 학습결과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2013년 이후를 평생학습계좌제 정착기로 정하고 사회적 학습망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촉진 국가자격체제와 연계하여 누적된 학습결과의 활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표 VI-2>에서 보는 것처럼 학습계좌제 관련 예산을 추정하고 있지만 본 연

구에서 추정한 소요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예산이며 확보 방안이 구체화 되기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표 VI-2> 학습계좌 개설인원 및 소요예산(안)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예 산	9.9억(특교)	9.1억	10억	10억	10억
학습 계좌 개설 인원	5천 명	2만 명	7만 명	13만 명	20만 명
1인당 지원 금액	198,000원	45,500원	14,285원	7,692원	5,000원

#### 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필요한 법령 제정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계좌)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근거로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평생학습계좌제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합리적인 협의체에서는 학습계좌제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과거의 법령인 학습계좌제를 평생학습계좌제로 혼용하는 것은 제도상의 큰 모순이 따를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제도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근거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계좌제를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국경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 부처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을 포함한 사업은 각 부처의 개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령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평생학습계좌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의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운영은 노동부가 주관이 되어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유관 기관들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사. 자격체제와 연계 구축

자격체제와 평생학습계좌제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습결과와 자격체제 모색, 학습경험의 개별자격으로 인정과 국가자격체제와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 사업 내 자격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적합 훈련 과정 목록 심사 시 훈련분야, 훈련 경로 상 해당 과정의 위치, 관련 자격 등을 정하고, 해당분야의 훈련이력을 관리하여 일정 시간이상 훈련이수 시 관련 자격 필기시험 면제제도(현행 기능사필기시험 면제제도)와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훈련생들이 훈련로드맵에 따라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는 사업 내 자격 등과 연계하여 직업능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별·업종별 협의체(Sector Council) 등의 역량제고를 통한 민간의 자격검정을 확대하여 산업계가 현장의 기술수요와 자격을 직접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아. 체계적인 연구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은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시범 사업의 합리적인 성과를 측정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점은 평생학습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행하기 위한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동 주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가 각 부처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인 평생학습계좌제의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비 지원 대상을 최소화해서 본 연구에서 사업 예산을 추정해본 결과 엄청난 예산의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뿐만이 아니라 예산 확보 정책 등이 구체화되기 전에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국정과제 수행에 다소 무리기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따른 제반 연구와 시범 사업 평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SUMMARY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ifelong Learning Accounts**

Namchul Lee, Ji-Sun Chung

Knowledge-based economy is creating a strong demand for workers who are educated, highly skilled and ready to learn. Lifelong Learning Accounts(hereafter LiLAs) are a promising new strategy to promote lifelong learning. LiLAs are supporting on government as a way to keep workforce competitive and provide working Koreans with education and training needed to advance in their careers.

Current status of lifelong learning in Korea have lack of lifelong learning infrastructure and attendance, insufficient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dults.

Recentl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OEST) and Ministry of Labor(MOL) are working to support existing LiLAs (Lifelong Learning Act)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LiLAs initiatives.

Korea government introduced LiLAs to establish national policy for promoting lifelong learning. This demonstration is affiliated with the Lifelong Learning Act partnership, which is a nation-based coalition that includes individuals from th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trade association, local workforce board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NGO, and university.

Korea's LiLAs program different from traditional job training programs because it allows individuals to plan and informed decisions for investing in their own future. The aim of the scheme is to boost skills for adults with or no qualifications and low incomes. More specifically, the core objectives of LiLAs are: to promote and support lifelong learning through repeated use of an LiLAs, to assist in widening participation in learning, to encourage take-up from those who face financial barriers to training by offering a higher financial incentive for those with low income, to encourage peopl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learning by making a personal commitment measured in time for some and financial terms for others.

Learning Accounts of MOEST and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Accounts of MOL have different names and objectives. However, they have provide a unique opportunity for employers and employees to work together to improve career related education and training.

LiLAs system has should the following features. First, individual workers are eligible for accounts. Second, individual participants choose the training and education. They need to meet their career goals based on a learning plan developed with education and career advisors. Once the support for lifelong learning is initiated, it first takes the form of a lifelong learning system such as LiLAs. LiLAs system is a mechanism that guarantees the right of an individual to learn throughout his/her lifetime. On the national level, it is a mechanism that supports individuals to achieve the learning objectives more effectively, as part of a means for individual learning. Therefore, the LiLAs system actually guarantees the learner's opportunity to learn as well as his/her right to learn, a right, which is socially certified for the result of an individual's learning.

## <부 록>

<부록 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145



## <부록 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이주호의원 대표발의, 2007. 2. )

#### 1. 제안경위

- 가. 발의자 : 이주호 · 최구식 · 이원복 · 이군현 · 임해규 · 주호영  
권철현 · 윤건영 · 박재완 · 공성진 · 김양수 의원  
(11인)
- 나. 발의연월일 : 2006. 12. 8
- 다. 회부연월일 : 2006. 12. 12

#### 2. 제안이유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학점은행제 실시,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등의 평생학습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한국성인(25~65세) 평생학습 참여율은 23.4%로 OECD 주요국의 평균참여율 44.0%에 비해 크게 낮으며, 직무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14.1%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개인학습계좌제를 도입, 군 현역병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대학 등록금이나 직업훈련을 위한 평생학습 비용 지원으로 연계시켜, 국가차원의 평생교육투자 확대 및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국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

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개인학습계좌제를 도입·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6조제2항).

나. 개인학습계좌제는 현역병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출산여성 등 적용대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6조제3항).

다. 개인학습계좌의 개설, 개인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열람, 증명서 발급 및 개인학습계좌제의 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6조제4항).

#### 4. 검토의견

동 법안은 현행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계좌제”를 “개인학습계좌제”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우선적 실시대상(현역병)을 규정하고, 업무위탁 등 세부사항에 관한 위임조항을 추가하고 있음.

동 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그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동 법안에서 의미하는 개인학습계좌제는 학습자개인별로 마련된 은행계좌로 학습비(학습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성격)를 지원하여 이를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비로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서 영국의 ILA(Individual Learning Account)<sup>1)</sup>제도와 유사한 방식을 택하고 있음.

특히, 안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동 제도를 현역병을 우선 실시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현역병 개인에게 매월 급여상당액(2008년부터는 월급여액의 2배)을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복무기간동안 해당 계좌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하고, 전역 이후 누적된 학습비를 대학등록금, 어학연

1) ILA : 영국의 개인학습계좌제(ILA: Individual Learning Accounts)는 학습기술법(Learning and Skill Act 2000)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의 평생학습을 목표로 영국 전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에서 실시된 제도임. 동 제도는 국민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들의 학습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액의 학습비용을 분담하도록 함.

수비, 기타 교육훈련참가비 등 교육훈련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이와 같은 동 법안의 내용은 학습비 지원 및 개인 학습이력의 관리를 통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평생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현역복무자들이 전역 후에 부담하게 되는 대학등록금 및 각종 교육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이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한편, 위와 같은 동 법안의 “개인학습계좌제”는 현행법에 따른 “교육계좌제”와 그 명칭이 유사하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한 제도라 할 수 있음.

즉, 현행법에 나타나 있는 “교육계좌제”는 개인별 학습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신상정보 및 학력, 자격증, 교육훈련실적 등의 정보를 “교육계좌”에 수록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평생에 걸쳐 누적된 자신의 학습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요자에 맞춘 다양한 학습정보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sup>2)</sup>라 할 수 있음.

2) 현행법 상 “교육계좌제”는 1999년 평생교육법 제16조제2항에 규정되고, 2001년 관련 시행령(제4조)이 마련되면서 법적인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2007년 현재까지 세부적인 시행방안 등 정책추진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평생교육법」

제16조(인적자원의 활용)

①(생략)

②국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조(교육계좌제의 운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이하 "교육계좌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의 개설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에 수록된 정보에 관한 열람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의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계좌제의 운영업무를 교육·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3조(교육계좌제의 운영)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직장교육훈련 및 평생교육이수실적
5. 기타 특기할 사항



따라서, 동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 상 “교육계좌제”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개인학습계좌제”를 신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동 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첫째, 동 법안에 따라 현역복무 중인 자에게 매월 급여상당액(또는 급여상당액의 2배)을 지원하되, 복무 중 누적된 재원을 전역 후에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각종 학습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현역복무자들은 1인 당 약 160만원(또는 약 300만원)을 전역 후 지원받게 될 것인바, 이로 인하여 현역복무자와 보충역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 사이의 형평성 문제 및 위화감 조성 문제, 군면제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 밖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과의 지원 우선순위 논란 등 대상 집단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둘째,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현역복무자들에 대한 학습비 지원에 향후 5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동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셋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법안에 따른 “개인학습계좌제”와 현행 “교육계좌제”는 각각 별개의 제도라 할 수 있으나, 안 제16조제2항 내지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학습계좌제”는 법문의 표현 상 현행 규정들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특히, 동 법안에 따른 “개인학습계좌제”는 개인에 대한 학습비 지원이 핵심 내용이고, 이에 따라 대규모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사항인 만큼, 법률에서 이러한 학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문헌

- 권두승(2008). 「평생학습계좌제 실행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제도 구축방안」, 2008년도 동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 한국평생교육학회.
- 김란수 외(1997). 『교육구조제 도입 방안 연구』, 교육부.
- 김영준(2006). 「지역사회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권 제1호, pp. 217-239.
- 김장호(2005). 『인적자원입국-비전과 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나영선 외(2005). 『지역수요밀착형 및 취약계층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인훈련계좌제 시범적용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노동부(2004). 『HRD-Net』 .
- \_\_\_\_\_ (2007). 『2007 노동백서』 .
- \_\_\_\_\_ (2007).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
-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국정과제』 .
- 박인중(2008). 「평생학습계좌제 실행을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 2008년도 동계학술연구 발표회 논문, 한국평생교육학회.
- 법제처(2008). 『현행법령(Internet)』 .
- 변중임 외(2007). 『교육계좌제 추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남철(2003).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학습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s)에 대한 사례 연구- 미국,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2003년도 14차 동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 한국세무회계학회.
- \_\_\_\_\_ (2007). 『21세기 국가전략: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개발』, 이원덕 편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남철·송동섭(2001). 『인적자원회계(HRA)제도의 도입 가능성 및 현실적 적용방안』, 노동부.
- 이남철 외(2006).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공동재정 기제-주요국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 이동임(2008).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방향 및 이에 대한 토론」, 평생학습계좌제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전국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자료.
- 이영(2008). 「평생학습계좌제 재정 소요 추정」, 2008년도 춘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 한국평생교육학회.
- 정지선 외(2003).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체제 구축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최돈민 외(2004). 『성인초등학력 인증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06). 『교육계좌제 시행을 위한 평생학습연계 촉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선주(2006). 「학습사회에서의 노동자의 평생학습권에 대한 고찰」, 노동사회.
- 최운실(2008). 「평생학습계좌제 정책의 진단과 과제」, 2008년도 춘계 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 한국평생교육학회.
- 최운실 외(2000). 『교육계좌제 실행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통계청(2004, 2007). 『한국의 사회통계지표』 .
- 평생교육진흥원(2008).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운영방안』 .
- 한국고용정보원(2007). 『고용보험 통계』 .
- 한국교육개발원(2007).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운영 결과 보고서』 .
- 한국노동연구원(2005).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지표』 .
- 한승희 외(2004). 『평생교육론: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학지사.
- Florida, Richard (2006).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번역서)』 .
- ILO(2003). *Lifelong Learning in Asia*
- Lee, Namchul(2007).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in Korea*, New York, NY : Peter Lang Publishing.
- OECD(200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 \_\_\_\_\_ (2008). *Education at a Glance.s*

\_\_\_\_\_ (2008). *Employment Outlook*.

Sherman, A.(2008). “Lifelong Learning Accounts”, CEDEFOP Seminar on Individual Learning Account.

Sherraden, M. et al.(2000). “Savings Patterns in IDA Programs”,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Missouri.



■ 저자 약력

· 이남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정지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방안 연구

· 발행연월일	2008년 11월 29일 인쇄 2008년 11월 30일 발행
· 발행인	권대봉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홈페이지: <a href="http://www.krivet.re.kr">http://www.krivet.re.kr</a> 전화: (02)3485-5000, 5100 팩스: (02)3485-5200
· 인쇄처	선우정보인쇄 (02)2272-6105, 6106
·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 등록번호	제16-1681호
· I S B N	978-89-6355-009-1 93370